

#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사건 데이터입력

## 작업성과 및 분석결과

(2014. 4.부터 2019. 5.까지 5개년간 사건 통계 분석)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희동

### 목 차

#### I. 서론

#### II. 법인회생 데이터입력 조사작업

1.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2. 조사내용
3. 분석방법

#### III. 연도별 분석

1. 연도별 사건 현황 및 종국사유
2. 접수-개시기간 분석
3. 개시-인가기간 분석
4. 인가-종결기간 분석
5. 인가전폐지 분석
6. 인가비율 분석
7. 종사자수, 자산 및 부채 규모 분석

#### IV. 업종별 분석

1. 업종분류 및 현황
2. 업종별 증감 추이 분석

3. 인가 및 인가전폐지 비율 분석

4. 인가후폐지 분석

5. 종사자수, 자산 및 부채 규모 분석

6. 자산과 부채 비율 분석

7. "청산가치/자산" 비율 분석

8. "계속기업가치/자산" 비율 분석

9. 회생담보권 비율, 조세채권 비율 분석

10. 회생채권(대여금) 현금변제율 분석

11.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부채" 비율 분석

#### V. M&A 현황

1. 연도별 M&A 현황

2. 업종별 M&A 현황

#### VI. 결론

1. 분석결과 종합

2. 향후대책

## I. 서론

회생기업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도산절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삼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면, 회생법원 입장에서는 회생절차 진행상 문제점이나 회생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입법이나 행정 특히 금융당국이나 정책금융기관 등에서는 공개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경제정책에 반영하거나 내부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법인회생에 대한 이론과 실무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증분석은 많지 않다.<sup>1</sup>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실증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up>2</sup>

이에 따라 2017. 3. 1. 개원한 우리나라 최초의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시범적으로 5개년간 법인회생 사건의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이번 작업이 앞으로 전국의 회생기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II. 법인회생 데이터입력 조사작업

---

<sup>1</sup> 기존의 실증연구로는 ① 「오수근, "기업회생제도(2006-2012)에 관한 실증적 연구", 상사법연구(34권1호, 통권86호), 한국상사법학회(2015)」와 ② 「강창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실증연구-조사위원의 선별기능을 중심으로-", 법조 제68권 제4호(통권 제736호)」가 있다. 전자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신청된 법인회생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고, 후자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 접수된 외부회계감사 대상기업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sup>2</sup> 현재 법인회생 사건들은 채무자명, 재판부, 각종 결정일 등에 관한 데이터만 관리되고 있을 뿐이고, 회생기업의 현황, 재무상태나 회생계획안에 대한 데이터들은 따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 1.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이번 조사는 전자기록 접수가 시작된 2014. 4. 28. 접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2 사건부터 2019. 5. 8. 접수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97 사건까지 총 1,921건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경과과정을 보면, 2019년 5월부터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내부 회의를 거친 후, 2019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각종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후 데이터 입력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친 후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법인회생 담당 법관들이 직접 전자기록을 열람하여 각 사건마다 신청서, 심문조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회생계획안, M&A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여 각종 데이터를 엑셀파일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였다.

## 2. 조사내용

먼저 기본적인 사건정보인 사건번호, 채무자명, 재판부, 주심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사건 진행상 각종 일자인 접수일, 개시결정일, 개시기각결정일, 인가전폐지결정일, 인가결정일,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일, 인가후폐지결정일, 종결결정일을 확인하였다. 인가전폐지의 경우 그 사유를 조사폐지,<sup>3</sup> 배제폐지,<sup>4</sup> 부결폐지,<sup>5</sup> 기타폐지<sup>6</sup>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회생기업의 현황 및 재무정보인 상장여부, 업종,<sup>7</sup> 종사자수, 자산, 부채,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회생계획상 내용인 회생담보권액수, 회생채권액수, 조세채권액수, 회생채권(대여금) 현금변제율, 회생채권(상거래) 현금변제율, M&A진행 여부, 인수대금, 지분보유조항 유무를 조사하였다.

---

<sup>3</sup> 개시결정이 있는 후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아서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sup>4</sup> 회생계획안 배제결정을 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sup>5</sup>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어 폐지되는 경우

<sup>6</sup> 조사폐지, 배제폐지, 부결폐지 이외의 경우(회생계획안 부제출 폐지 등)

<sup>7</sup>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10차)를 기준으로 하였다.

### 3. 분석방법

이와 같이 조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도별과 업종별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조사 대상 사건 1,921건 중 개인 31건, 취하 392건, 개시기각 126건, 병합 1건을 제외한 1,370건을 분석 대상으로 한 것도 있고, 업종분류시 일부 사건이 더 제외되어 1,227건을 분석 대상으로 한 것도 있다. 분석결과인 도표는 직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세로막대형이나 꺾은선형 차트를 이용하여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III. 연도별 분석<sup>8</sup>

### 1. 연도별 사건 현황 및 종국사유

#### 가. 연도별 사건 현황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최근 6년간 접수건수는 아래 [표1]과 같다.<sup>9</sup>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건수가 증가하다가 2017년에 감소한 이후 2018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2019년은 2018년에 비하여 사건수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sup>10</sup>

---

<sup>8</sup> 연도별 사건수나 기간 등은 모두 '접수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2016년 인가후종결 사건수(132건)에는 2016년에 접수되어 2017년에 인가되고 2019년에 종결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sup>9</sup>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4년 이전 법인회생 접수건수는 2007년 29건, 2008년 111건, 2009년 192건, 2010년 150건, 2011년 191건, 2012년 268건, 2013년 296건으로(사법연감, 위 오수근 교수 논문에서 재인용),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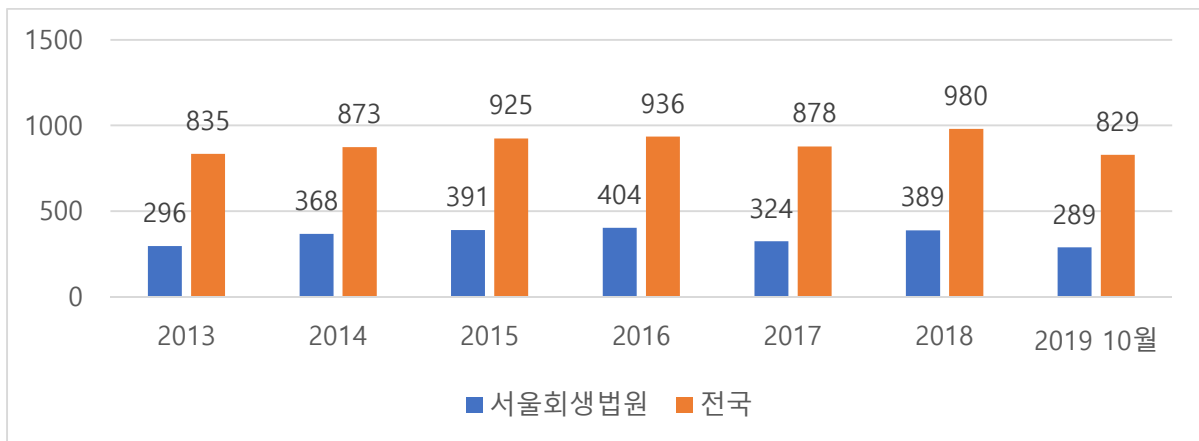
<sup>10</sup> 이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의 법인회생 접수건수는 2014년 90건, 2015년 73건, 2016년 83건, 2017년 94건, 2018년 86건, 2019년(10월까지) 126건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2018년에 감소하였고 2019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하면서 종래 서울회생법원 관할이던 회생기업들 중 일부가 수원지방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표1] 서울회생법원 연도별 접수건수 (단위 : 일수)

	회합	간회합	전체
2014년	366	0	366
2015년	315	76	391
2016년	268	136	404
2017년	214	110	324
2018년	255	134	389
2019년(9월까지)	181	80	261

다음으로,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수와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수를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 서울회생법원은 전국 법인회생 사건의 35% ~ 43%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 자료<sup>11</sup>에 의하면 2018년 총 법인수는 816,370개이고, 그 중 서울 소재 법인수는 242,809개로, 전국 대비 서울 소재 법인 비율은 29.7%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울 소재 법인 비율보다 서울회생법원 접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의 관할이 서울 소재 법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기업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서울 고등법원 관할에 소재하거나 법이 정한 대형 법인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2</sup>

[표2] 전국 법원과 서울회생법원 연도별 접수건수 비교 (단위 :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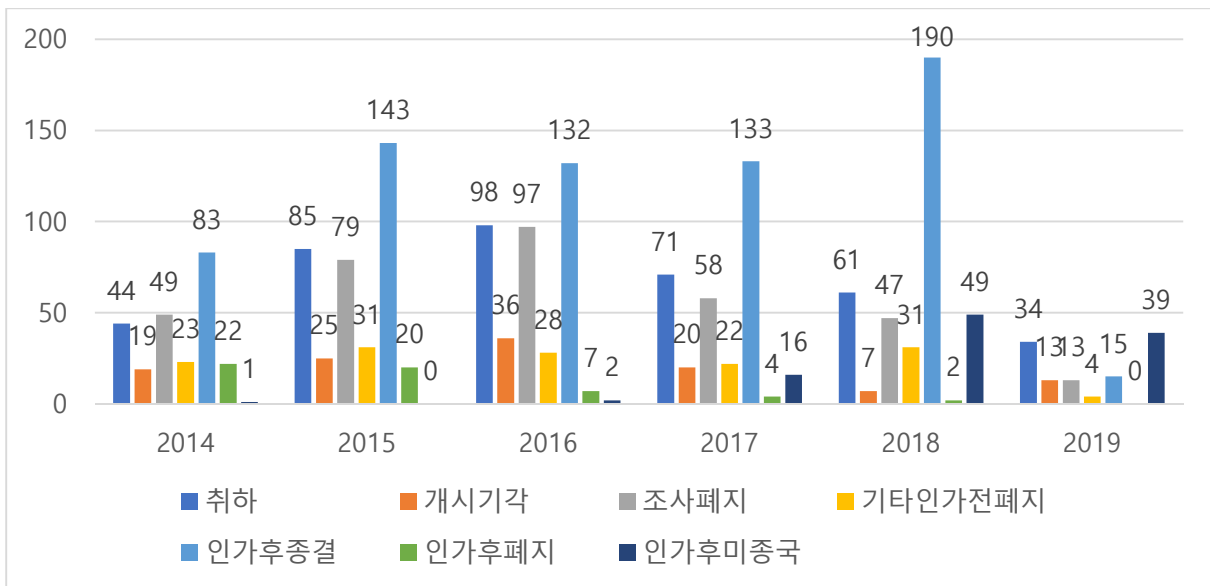
<sup>11</sup> 국가통계포털(kosis.kr)의 '8.6.1 지역별 가동 법인수' 참조

<sup>12</sup>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 참조

## 나. 연도별 중국사유

조사대상 전체사건의 최종 중국 사유는 아래 [표3]과 같다. 2014년도는 2014년 5월부터 12월까지 접수분만 포함되어 있고, 2019년도는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분만 포함되어 있다(이하부터 이 글에서 2014년과 2019년은 모두 위 기간만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사건, 각하된 사건은 제외하였다. 취하, 개시기각, 조사폐지가 2016년도에 가장 높았다가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2018년도에 인가후종결된 사건이 상당히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표3] (연도별) 중국사유별 사건수 (단위 : 건수)



## 2. 접수-개시기간 분석

개시결정이 있었던 사건들의 접수일부터 개시결정일까지 걸린 평균 일수의 변동추이는 아래 [표4]와 같다. 2014년 평균 30일, 2015년 평균 20일이 걸렸고, 그 이후부터 계속하여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4] 접수일부터 개시결정일까지 걸린 기간 (단위 : 일수)



### 3. 개시-인가기간 분석

개시결정일부터 인가결정일까지 걸린 평균 일수의 변동추이는 아래 [표5]와 같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5] 개시결정일부터 인가결정일까지 걸린 기간 (단위 : 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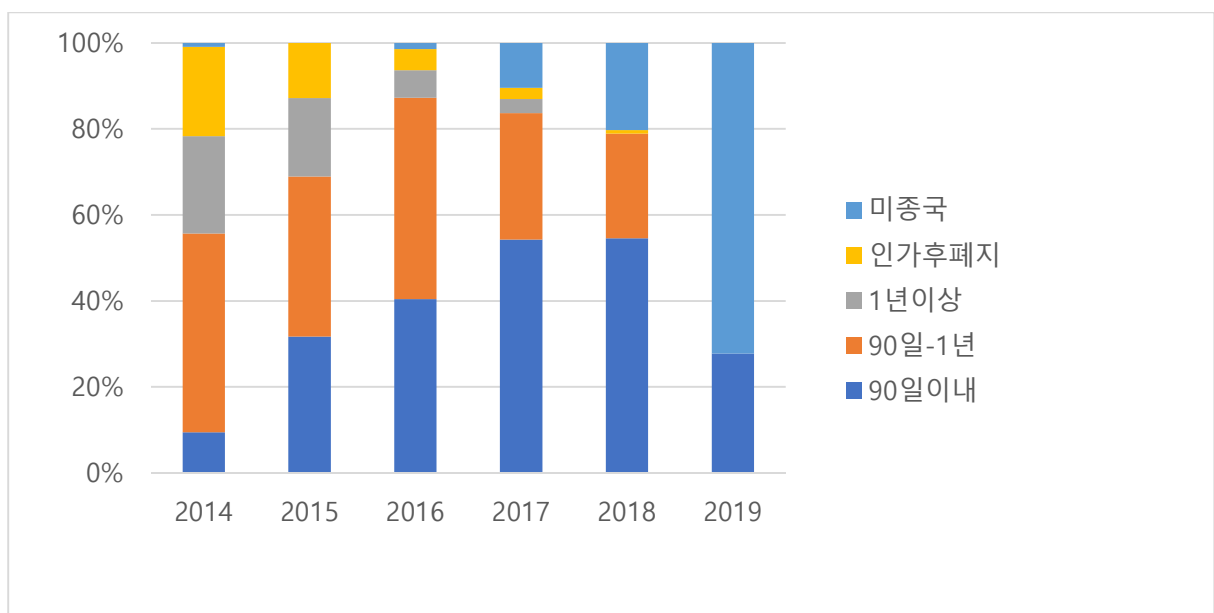
### 4. 인가-종결기간 분석

종결된 사건을 대상으로 인가부터 종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을 산출한 결과, 2014년 331일, 2015년 247일, 2016년 151일, 2017년 105일, 2018년 85일, 2019년 42일이었다. 최근 연도일수록 기간이 짧게 나오는데, 이것은 최근에 접수된 사건일수록 중국이 되지 않은 사건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따라서 위 수치만으로는 인가부터 종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선 종결된 사건들의 인가부터 종결까지 걸린 기간을 ① ‘90일 이내’, ② ‘90일부터 1년 이내’, ③ ‘1년 이상’으로 3단계로 나누었다. 그리고 위 종결된 사건들에 ④ 인가후폐지된 사건, ⑤ 미종국 사건을 모두 포함한 전체 사건 수 중 각 해당 비율을 구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6]과 같다.

90일 이내에 종결된 사건 비율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급격히 증가해 오다가 2019년 1분기는 다소 감소하였다.<sup>13</sup> 1년 이내에 종결된 사건 비율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sup>14</sup>

[표6] 인가결정일부터 종결결정일까지 걸린 기간별 비율 (단위 : %)



## 5. 인가전폐지 분석

인가전폐지된 사건을 조사폐지, 배제폐지, 부결폐지, 기타폐지로 나누어 연도별로 사건수를 확인한 결과는 아래 [표7]과 같다. 그리고 같은 자료를 사유별 비율로 확인해 보았는데, 아래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제폐지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한 것이 확인되기는 하나, 배제폐지나 부결폐지된 사건수가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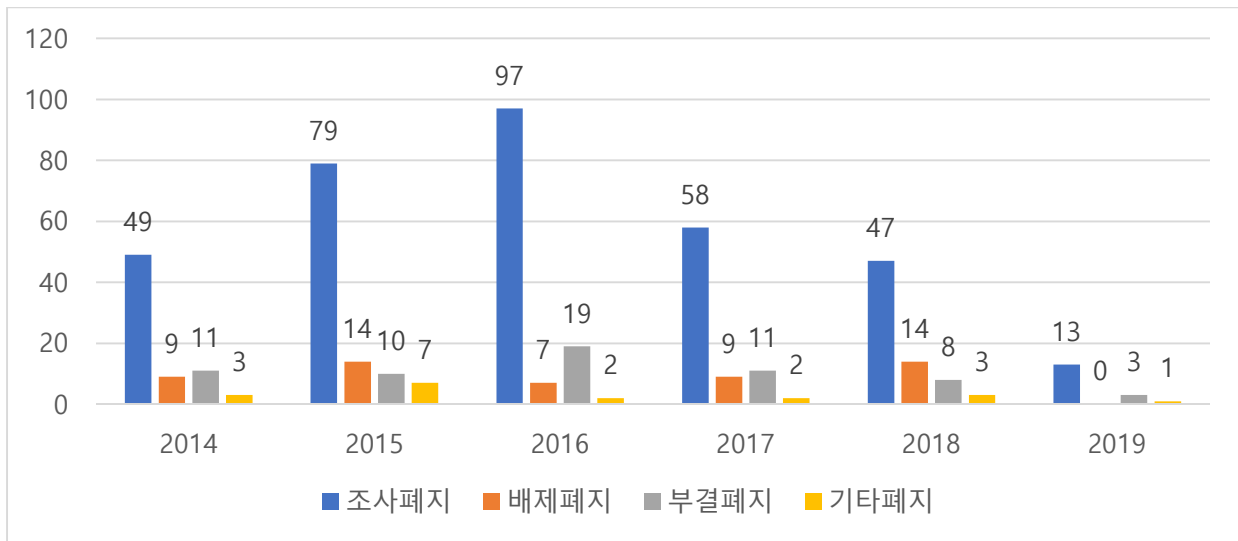
<sup>13</sup> 2019년 전체 접수 사건의 ‘90일 이내’ 종결 비율은 더 증가할 수도 있다.

<sup>14</sup> 2018년 접수 사건의 ‘1년 이내’ 종결 사건수는 아직 미확정이다. 2016년보다 증가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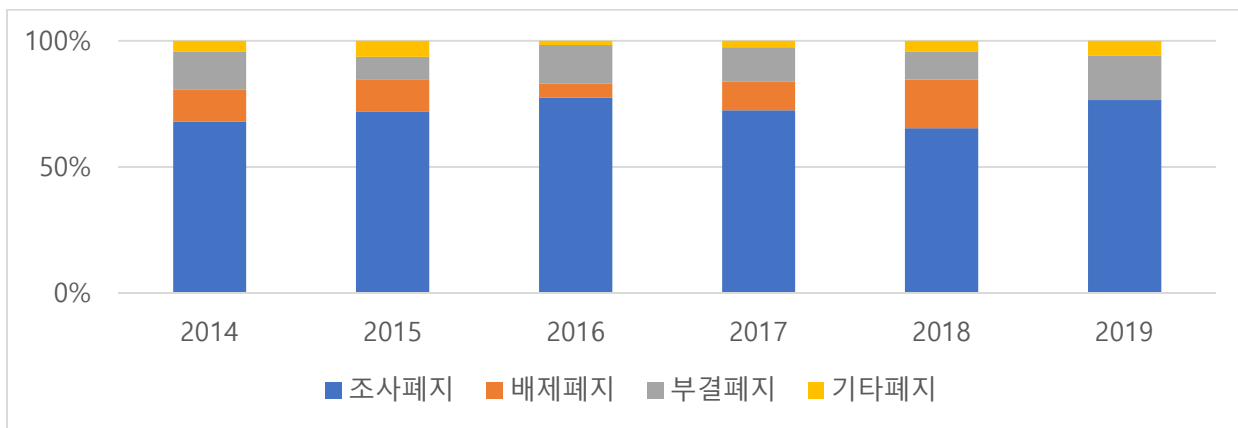


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표7] 연도별 인가전폐지 사유별 사건수 (단위 :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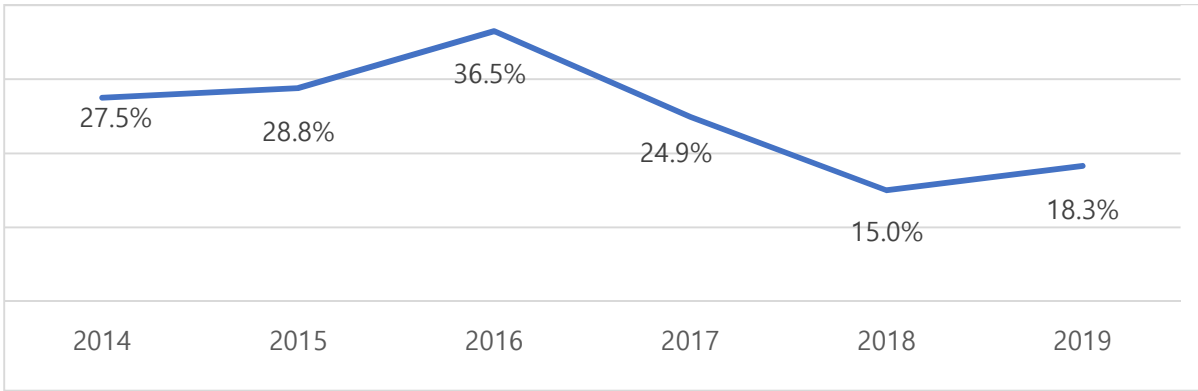


[표8] 인가전폐지 사유별 비율 (단위 : %)



다음으로 개시된 사건 중 조사폐지되는 비율은 아래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27.5%, 2015년 28.8%, 2016년 36.5%, 2017년 24.9%, 2018년 15%, 2019년 18.3%이다. 2016년도에 조사폐지율이 상당히 증가하였다가 2017년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조사폐지율이 20%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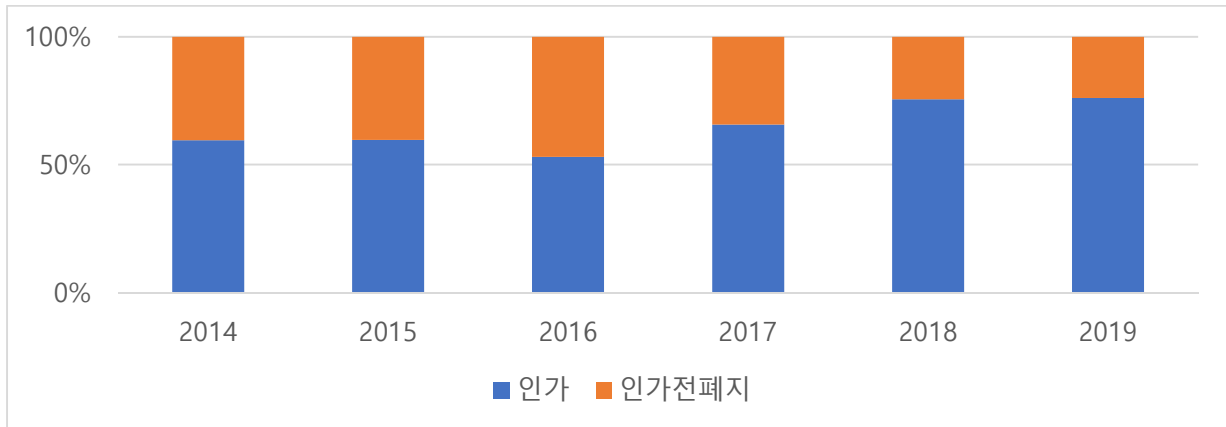
[표9] 개시후 조사폐지 비율 (단위 : %)



## 6. 인가비율 분석

개시된 사건의 인가비율은 아래 [표10]과 같다. 2014년 59.6%, 2015년 59.7%, 2016년 53%, 2017년 65.7%, 2018년 75.5%, 2019년 76%이다. 개시된 사건의 인가 가능성이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이 확인된다.

[표10] 인가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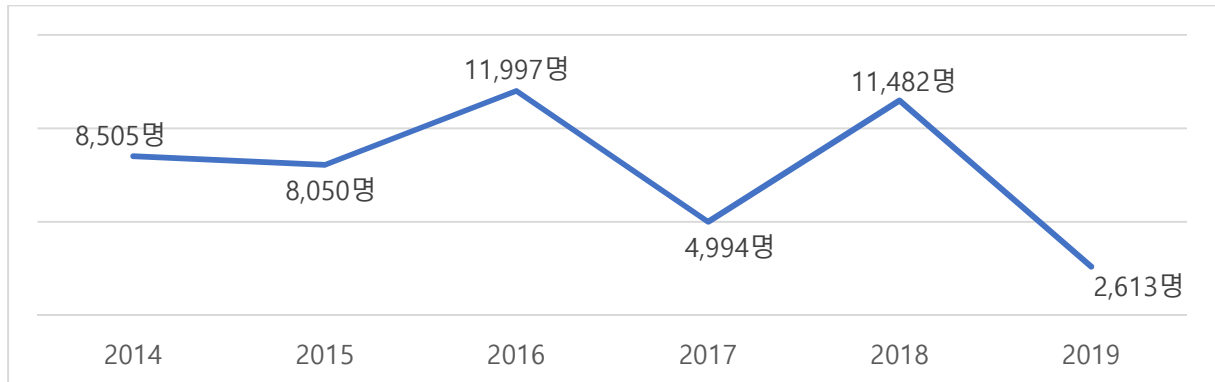


## 7. 종사자수, 자산 및 부채 규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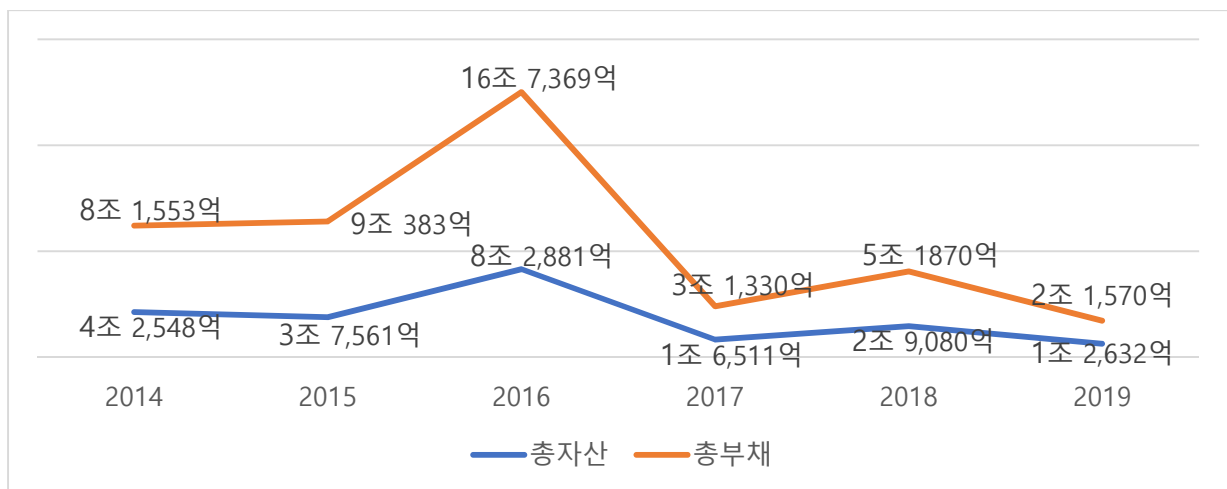
연도별로 희생기업 종사자수를 모두 합하여 본 결과는 아래 [표11]과 같고,

연도별로 자산과 부채를 각각 모두 합하여 본 결과는 아래 [표12]<sup>15</sup>와 같다.<sup>16</sup> 종사자수, 자산, 부채 모두 2016년에 증가하였다가 2017년에 감소하고 다시 2018년에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6년에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은 한진해운 주식회사,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 등 규모가 상당히 큰 기업들이 2016년에 다수 회생을 신청하였기 때문이다.

[표11] 연도별 전체 사건 종사자수 합계 (단위 : 명)



[표12] 연도별 전체 사건 자산 합계와 부채 합계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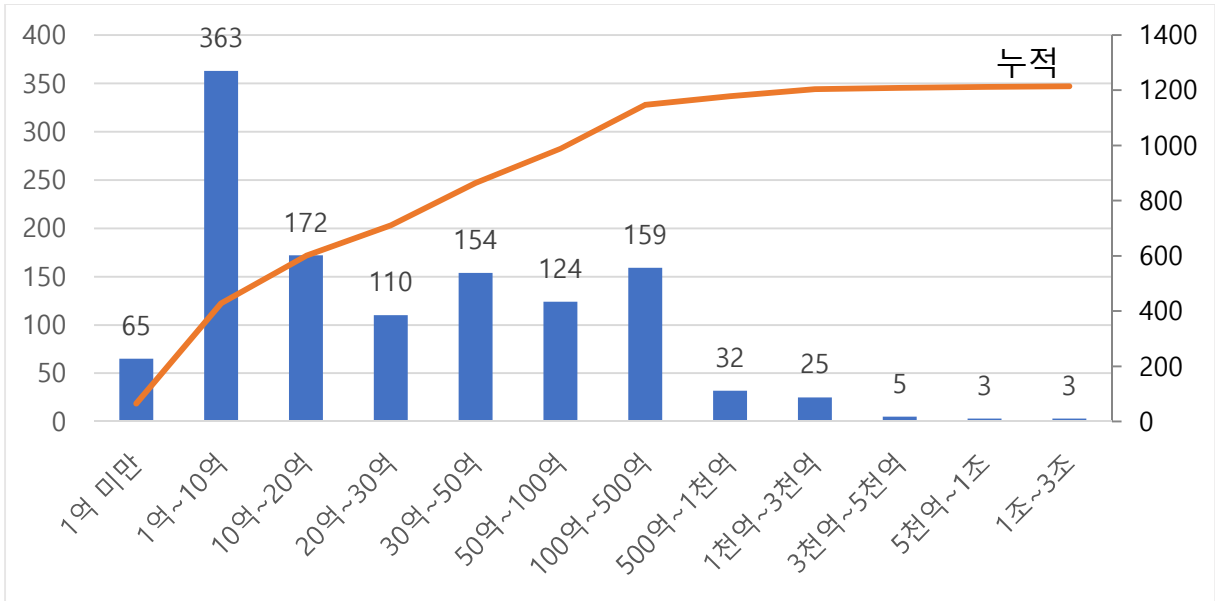
다음으로 자산규모별로 사건수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13]과 같다. 누적비

<sup>15</sup> 국가통계포털(kosis.kr)의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자산규모별 주요지표(2017)'에 의하면, 2017년 전체 기업체 666,095개의 자산 합계는 9,633조, 부채 합계는 6,785조이다. 조사대상인 5년간 회생기업 전체(취하, 개시기각 등 제외) 자산합계는 22조 1,213억 원으로, 전체 기업체 자산합계 9,633조의 0.23%에 해당한다.

<sup>16</sup> 위 표에 나오는 수치는 개인, 취하, 각하, 개시기각된 사건은 제외하고 산정한 수치이다.

율로 보면, 자산 10억 원 미만인 회생기업은 전체의 35%, 자산 50억 원 미만인 회생기업은 전체의 71%, 자산 100억 원 미만인 회생기업은 전체의 81%, 자산 500억 원 미만인 회생기업은 전체의 94%였다. 그리고 자산 1,000억 원 이상<sup>17</sup>인 회생기업은 전체의 3%로 매우 적었다.

[표13] 자산규모별 사건수 (단위 : 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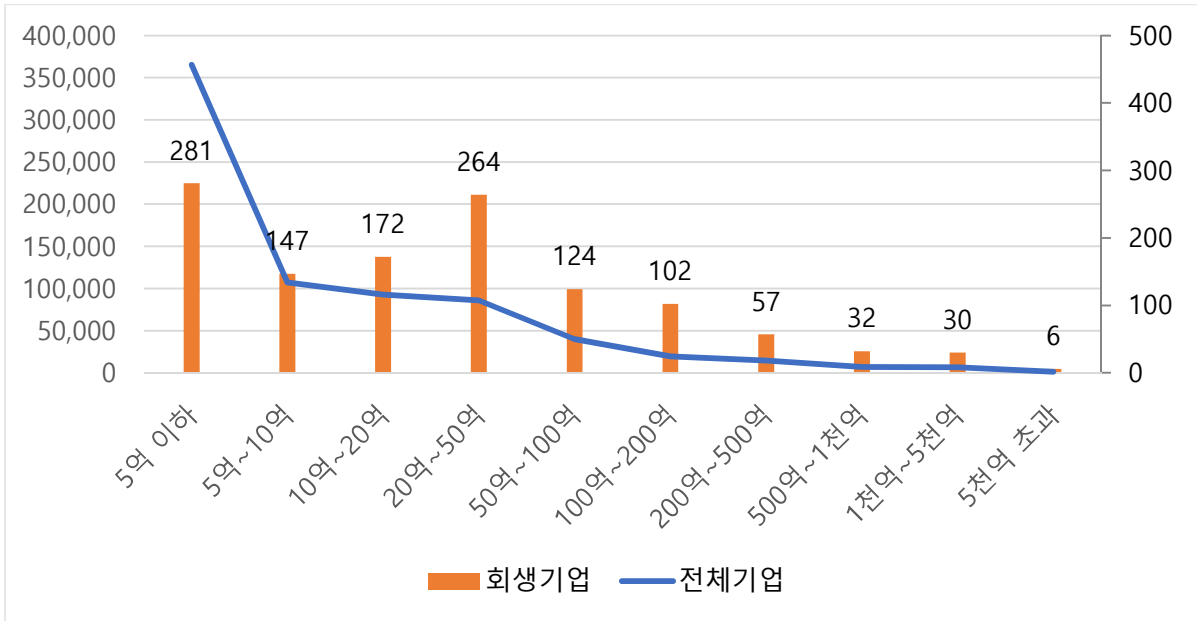


아래 [표14]는 자산규모별로 전체기업 분포와 회생기업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전체기업의 자산규모는 '5억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고 '5억~10억', '10억~20억', '20억~50억' 구간으로 갈수록 사건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반하여, 회생기업은 '5억~10억' 구간보다 '10억~20억' 구간 사건수가 더 많고, '10억~20억' 구간보다 '20억~50억' 구간 사건수가 더 많았다. 즉, 자산 10억 원 ~ 100억 원 규모의 기업들이 회생절차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4] 자산규모별 전체기업<sup>18</sup>과 회생기업 사건수 비교 (단위 : 건 수)

<sup>17</sup> 참고로, 자산 총액 1,000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상근감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상법 제 542조의10 제1항, 동 시행령 제36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상법 제542조의11 제1항, 동 시행령 제37조 제1항).

<sup>18</sup> 국가통계포털(kosis.kr)의 '8.2.2 업태별·자산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20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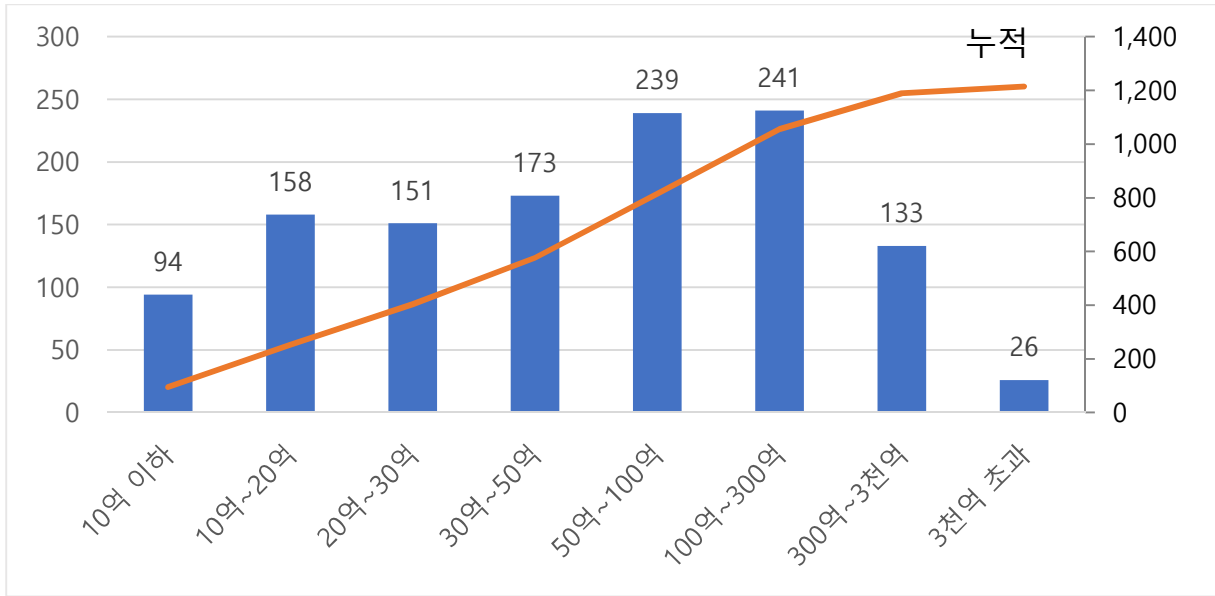
아래 [표15]는 부채규모별로 회생기업 사건수를 집계한 것이다.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현재 3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sup>19</sup> 따라서 부채규모별, 특히 부채 30억 원과 부채 50억 원을 기준으로 회생기업 비율을 확인하는 것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회생기업 비율을 파악하는 의미가 있다.<sup>20</sup> 그 결과 ‘부채 30억 원 이하’인 회생기업이 전체의 33.17%<sup>21</sup>이고, ‘부채 50억 원 이하’인 회생기업이 전체의 47.4%였다.

[표15] 부채규모별 사건수 (단위 : 건 수)

<sup>19</sup>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동 법 시행령 제15조의3 참조

<sup>20</sup> 간이회생절차 대상은 ‘부채’가 아니라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① 대체로 위 두 액수의 차이가 크지 않고, ② 뒤에 살펴볼 업종별 분석결과에 의하면 건설업의 경우 부채에 비해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2배 이상 커서 큰 차이를 보이나, 이것은 건설업에 미발생구상채권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미발생구상채권은 현실화된 경우가 아니어서 간이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당시에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 보기 어려워 기준 채권액에서 제외하므로[회생사건실무(하) 315면 참조], ‘부채’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았다.

<sup>21</sup> 연도별 전체 사건수 대비 간이회생 사건수 비율을 보면, 2016년 33.7%, 2017년 34%, 2018년 34.4%, 2019년 30.7%이다. 부채 30억 원 이하인 회생기업 비율과 간이회생 사건수 비율이 거의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 IV. 업종별 분석

##### 1. 업종분류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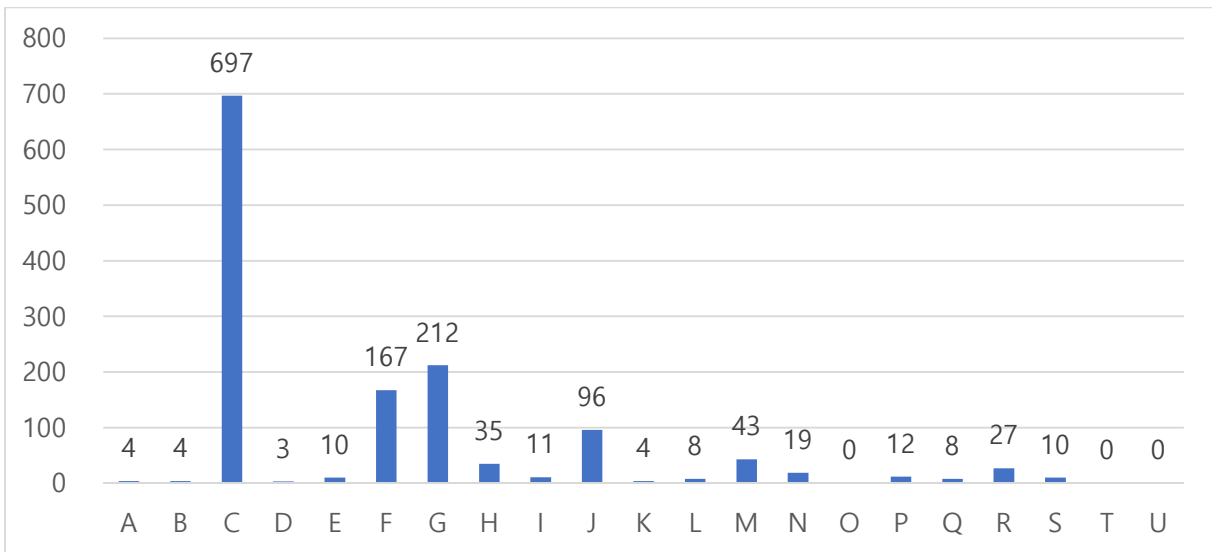
업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따라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사건 1,921건 중 개인 31건, 취하 392건, 개시기각 126건, 병합 1건을 제외한 1,370건의 업종별 사건수는 [표16]과 같다.

[표16]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별 사건수 (단위 : 건수)

기호	한국표준산업분류	건수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4
B	광업(05~08)	4
C	제조업(10~34)	697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3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10
F	건설업(41~42)	167
G	도매 및 소매업(45~47)	212
H	운수 및 창고업(49~52)	35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11

J	정보통신업(58~63)	96
K	금융 및 보험업(64~66)	4
L	부동산업(68)	8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43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19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0
P	교육 서비스업(85)	12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8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27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10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 활동(97~98)	0
U	국제 및 외국기관(99)	0
합계		1,370

[표1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별 사건수 비교<sup>22</sup> (단위 : 건수)



그런데 위 표[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제조업인 회생기업이 전체 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업종은 도소매업(업종코

<sup>22</sup> 국가통계포털(kosis.kr)의 '8.6.2 업태별 가동 법인수(2018)'에 의하면 총 816,370개 법인이 있고, 그 중 제조업은 171,100개(21%), 건설업은 107,018개(13.1%), 도소매업 193,097개(23.7%)이다. 위 [표17]에 따른 업종별 접수비율은 제조업 50.9%, 건설업 12.2%, 도소매업 15.5%이므로, 제조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법인회생 절차를 훨씬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드 G), 건설업(업종코드 F), 정보통신업(업종코드 J) 정도를 제외하면 상당히 소수이기 때문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구분하여 회생기업을 분석하는 것은 업종별로 분석하는 의미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사건수를 감안하여 제조업을 ‘식품제조’<sup>23</sup>, ‘의류제조’<sup>24</sup>, ‘전자전기제조’<sup>25</sup>, ‘기계제조’<sup>26</sup>, ‘비철금속제조’<sup>27</sup>, ‘기타제조’<sup>28</sup>로 6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나머지는 ‘건설업’<sup>29</sup>, ‘운수창고업’, ‘도소매업’<sup>30</sup>, ‘정보통신업’<sup>31</sup>, ‘골프장업’만을 분석 대상 업종으로 선택하였다. 운수창고업과 골프장업은 사건수는 많지 않으나 자산과 부채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포함하였다. 이에 따른 업종별 분석 대상 사건수는 총 1,227건이다.

이하에서는 [표18]과 같이 분류한 총 11개 업종 1,227개 사건으로 업종별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

<sup>23</sup> 예) 육류 가공, 수산물 가공, 떡·과자·건강기능식품 등 제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업종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분류하는데, 여기 기재한 업종별 예)는 실제 사건의 세세분류 업종명 중 많이 나타나는 것을 위주로 기재한 것이다.

<sup>24</sup> 예) 직물 직조, 원단제조, 염색가공, 정장·셔츠·작업복·유아용의복 등 제조, 액세서리·가방·신발 제조

<sup>25</sup> 예) 전자집적회로·반도체·인쇄회로기판·기타전자부품 제조, 컴퓨터·기타주변기기 제조, 통신·방송 장비·영상기기 제조, 의료기기 제조, 제어장비·발전기·배전반·전기자동제어반 제조, 조명·난방·전기기기 제조

<sup>26</sup> 예) 내연기관·컨베이어장치·냉장장비·공기조화장치·액체여과기 등 제조, 반도체 제조용기계 등 제조, 주형·금형 제조, 자동차 부품 제조, 선박·기타 운송장비 제조

<sup>27</sup> 예) 유리, 콘크리트, 강관 제조, 알루미늄 압연·압출, 구조용 금속판제품, 금속공작물, 금속 조립 구조재, 도금·도장

<sup>28</sup> 예) 목재·종이 제조, 인쇄, 화장품·기타화학제품 제조, 플라스틱 필름·시트·용기 등 제품 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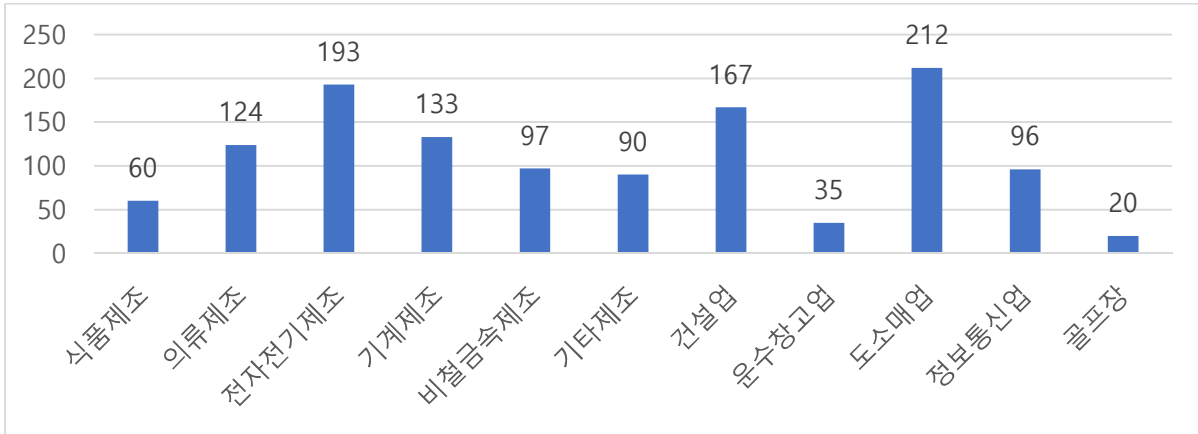
<sup>29</sup> 예) 아파트·상업용건물·도로·토목시설물 건설, 토공사업, 철골·철근콘크리트·조적 등 공사업, 배관·냉난방·건물설비 공사업, 일반전기·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도배·실내장식·유리·창호 공사업

<sup>30</sup> 도매업 181건, 소매업 31건로 도매업 사건수가 소매업 보다 많다.

<sup>31</sup> 학습서적 출판, 게임·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 제작·배급,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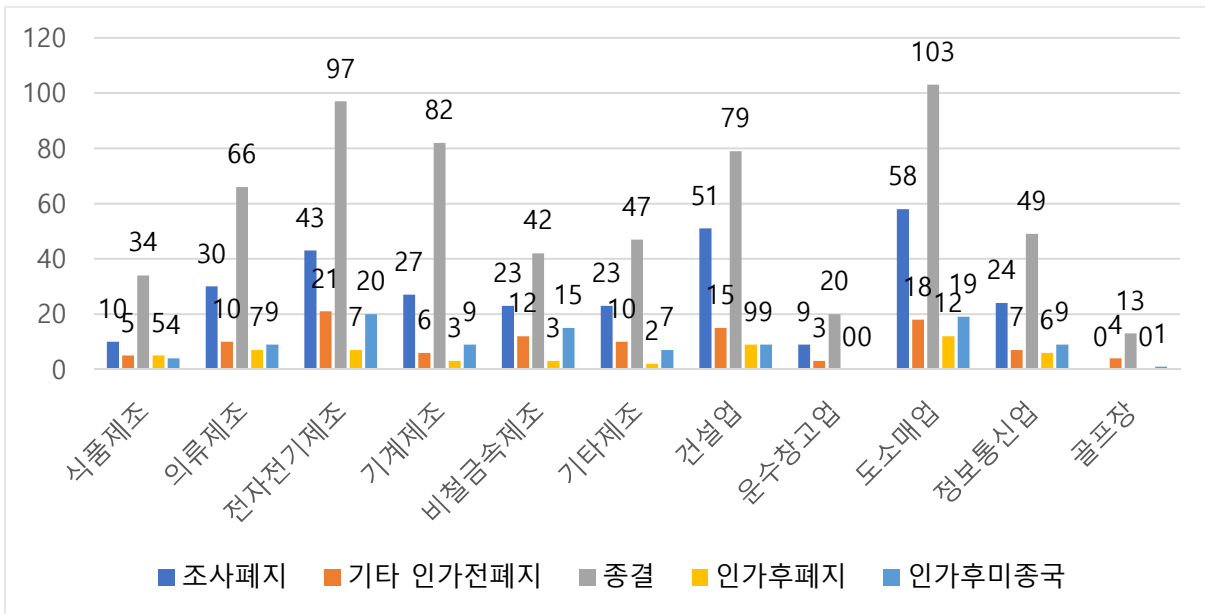


[표18] 분석대상 업종별 사건수 (단위 : 건수)



업종별로 개시된 사건의 중국사유별 사건수를 집계한 결과는 아래 [표19]와 같다.

[표19] (업종별) 중국사유별 사건수 (단위 :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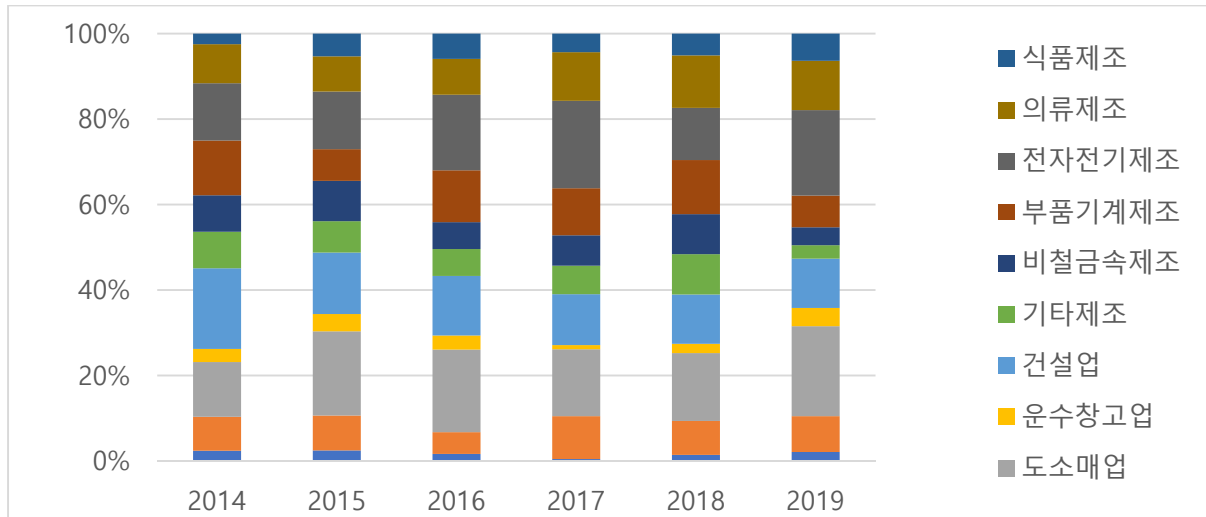


## 2. 업종별 증감 추이 분석

연도별로 접수가 특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업종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도별로 그 비중의 변동 추이를 확인한 결과는 아래 [표20]과 같다. 의류제조업은 2014년 15건, 2015년 20건, 2016년 20건, 2017년 24건, 2018년 34건, 2019년

(4월까지) 1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sup>32</sup> 운수창고업은 2015년 10건, 2016년 8건, 2017년 2건, 2018년 6건으로, 2015년과 2016년에 많이 접수되었다가 2017년에 감소하였고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019년에 전자전기제조업과 도소매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업종에 따라 연도별로 아주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표20] 업종별 사건수 증감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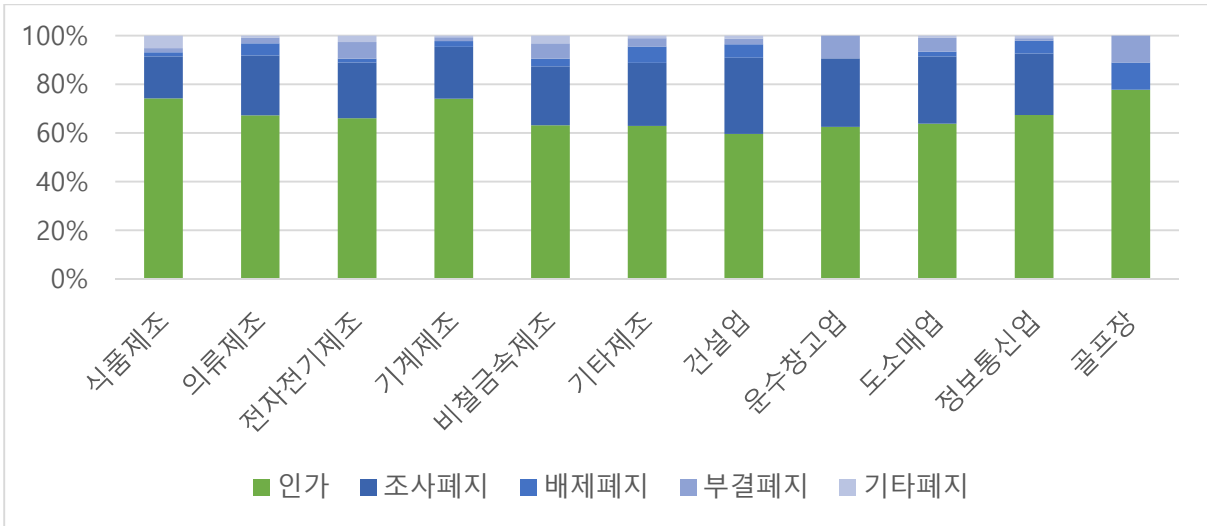
### 3. 인가비율 및 인가전폐지 비율 분석

업종별로 인가비율을 확인해 본 결과,<sup>33</sup> 아래 [표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골프장업이 77.78%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이 59.5%로 가장 낮았다. 골프장업 다음으로는 식품제조업이 74.14%, 기계제조업이 74.02%로 높은 편이었다.

[표21] 업종별 인가 비율과 인가전폐지 비율 비교 (단위 : %)

<sup>32</sup> 의류 도소매업의 경우 2014년 6건, 2015년 2건, 2016년 9건, 2017년 3건, 2018년 4건, 2019년 2건으로 2016년에 특히 많았다가 그 뒤로는 비슷하다. 이러한 의류제조업과 의류 도소매업의 사건수 증감 추이를 보면, 2016년에 의류 도소매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2018년부터 의류제조업도 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sup>33</sup> 인가전 미종국된 사건은 제외하고 비율을 구하였다.



다음으로 개시된 사건 중 조사폐지되는 비율을 업종별로 구해본 결과 아래 [표22]와 같다. 가장 특이한 점은 골프장업의 경우 조사폐지된 경우가 없었다는 것이다. 골프장 사건 총 20건 중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는 사건은 4건인데 모두 인가전 M&A를 거쳐 인가결정을 받았다. 그렇다고 골프장 사건이 모두 인가되는 것은 아니고 회생계획안 배제결정을 받아 폐지된 경우가 2건<sup>34</sup>,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어 폐지된 경우가 2건<sup>35</sup> 있었다.<sup>3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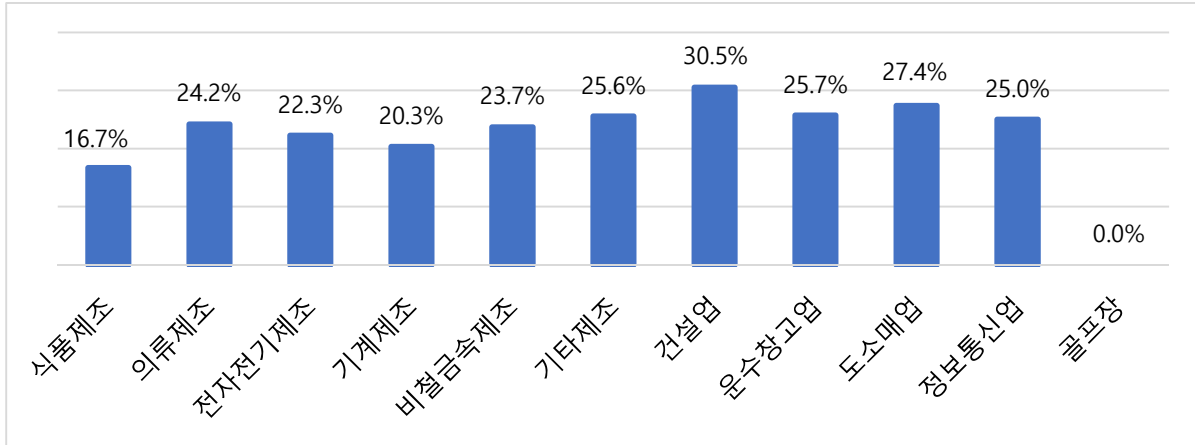
골프장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개시후 조사폐지 비율을 살펴보면 업종별로 꽤 차이가 나타났다. 개시후 조사폐지 비율이 높은 업종은 건설업 30.5%, 도소매업 27.4%이었고, 낮은 업종은 식품제조업 16.7%, 기계제조업 20.3%이었다.

<sup>34</sup> 엔씨씨, 선운

<sup>35</sup> 신니개발, 제주칸트리구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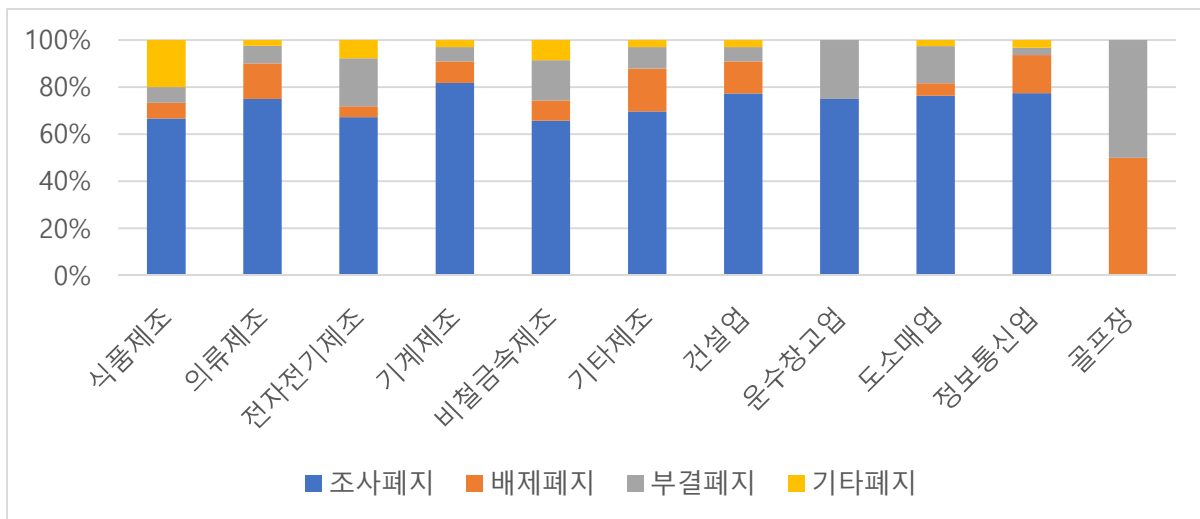
<sup>36</sup> 참고로 조사대상 골프장 전체 사건은 다음과 같다. 14회합117 천원종합개발(안성시, 마에스트로 CC), 14회합100057 오투리조트(구 태백관광개발공사)(태백시, 오투리조트CC), 14회합173 오션뷰(경북영덕, 오션뷰CC), 14회합100199 한일개발(강원횡성, 옥스필드CC), 15회합100067 호원(서귀포시, 더클래식CC), 15회합100099 동부월드(충북음성, 레인보우힐스CC), 15회합100119 삼대양레저(강원횡성, 청우CC→알프스대영CC), 15회합100120 엔씨씨(안산시, 아일랜드CC), 15회합34 씨제이파라다이스(경북칠곡, 세븐밸리CC), 15회합100296 케이알스포츠(구 꽃담레저)(경북군위, 세인트웨스턴CC→구니CC), 16회합100040 선운(포천시, 필로스CC), 16회합100060 광릉레저개발(남양주시, 광릉CC), 16회합100068 신니개발(충주시, 로얄포레CC), 16회합100283 경기관광개발(경기광주시, 블루버드CC→큐로CC), 17회합100091 및 19회합100058 제주칸트리구락부(제주시, 제주CC), 18회합100038 레이크힐스순천(순천시, 레이크힐스순천CC), 18회합100053 대지개발(경기양평, 양평TPC), 18회합100103 버드우드(천안시, 버드우드CC), 18회합100253 일송개발(레이크힐스용인CC, 레이크힐스안성GC), 19회합100073 동해디앤씨(충남태안, 태안비치CC)

[표22] 업종별 개시된 사건의 조사폐지 비율 (단위 : %)



그리고 아래 [표23]에서는 인가전폐지가 된 사건만을 대상으로 그 사유별로 비율을 살펴보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업은 조사폐지가 없이 배제폐지된 경우와 부결폐지된 경우가 각 50%였다. 그리고 운수창고업은 조사폐지와 부결폐지된 경우만 있고 배제폐지된 경우가 없었던 점이 특이하나, 사건수 자체가 적어서 그리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배제폐지가 많은 업종은 의류제조업, 기타제조업, 정보통신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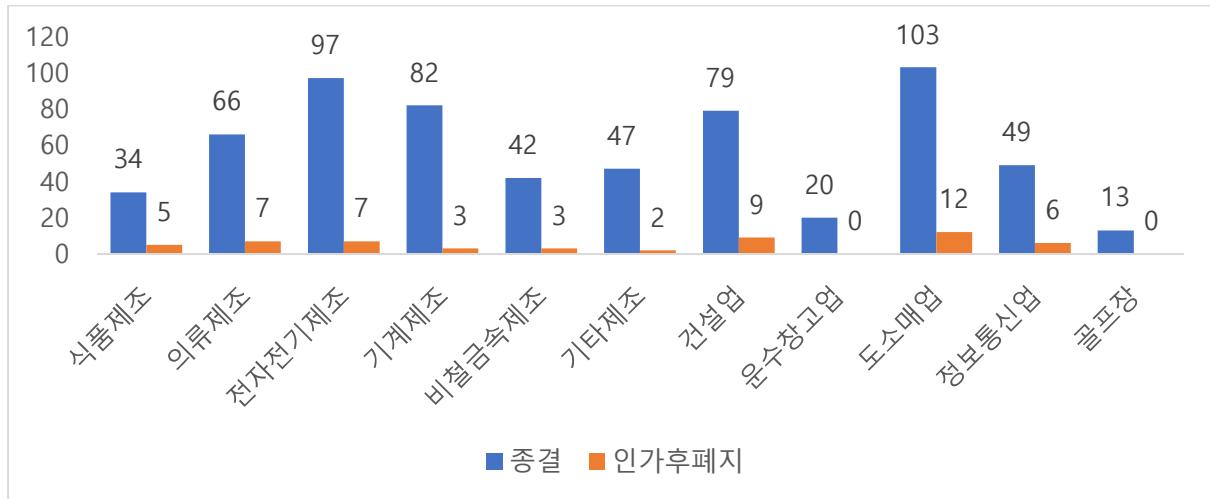
[표23] 업종별 인가전폐지 사건의 폐지사유별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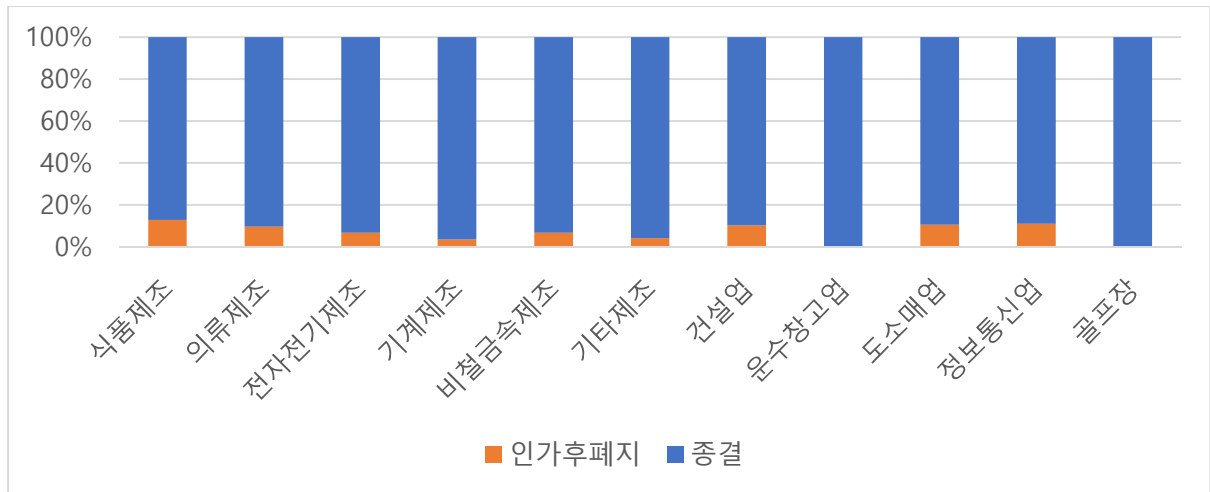
#### 4. 인가후폐지 분석

업종별로 인가후폐지가 많이 되는 업종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건과 인가후폐지된 사건을 사건수(아래 [표24])와 비율(아래 [표25])로 비교해 보았다. 골프장업과 운수창고업은 인가후폐지가 된 경우가 없었다. 그리고 인가후 폐지 비율은 기계제조업이 3.5%, 기타제조업 4.1%로 낮은 편이었으며, 식품제조 업이 12.8%로 가장 높았다.

[표24] 종결과 인가후폐지된 사건수 비교 (단위 : 건수)



[표25] 업종별 종결과 인가후폐지 비율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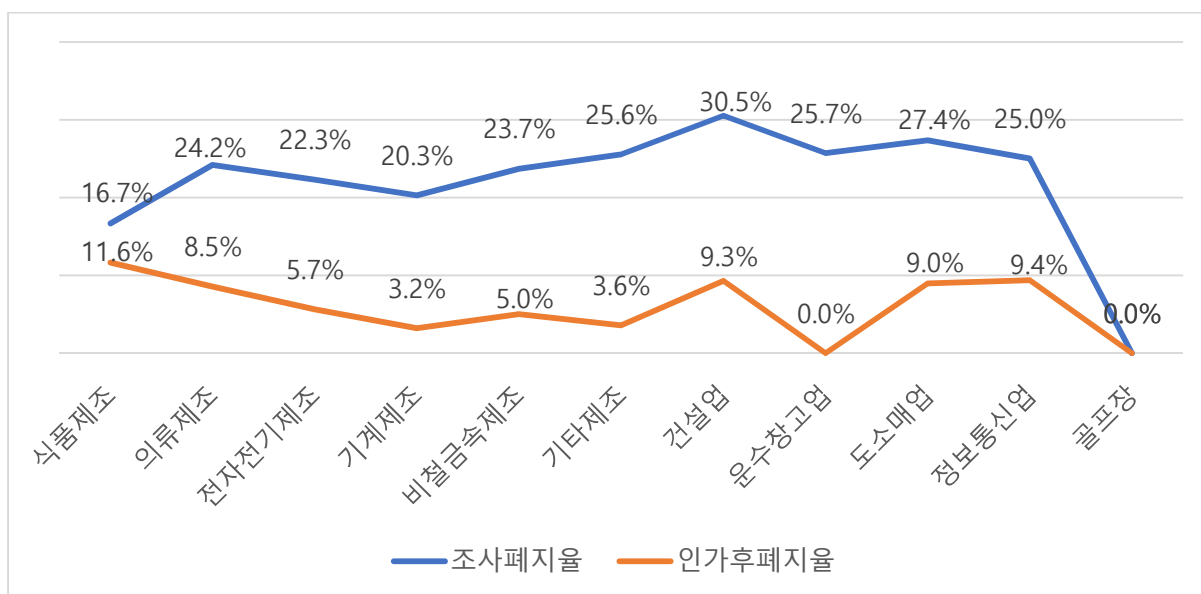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조사폐지가 많이 된 업종의 경우에는 인가후폐지가 적게 되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표26]에서는 개시된 사건 중 조사폐지되는 비율과 인가된 사건 중 인가후폐지되는 비율을 비교해 보았다.

식품제조업의 경우 조사폐지 비율이 16.7%로 가장 낮는데 인가후폐지 비율은 11.6%로 가장 높아서 이러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건설업은 조사폐지 비율이 30.5%로 가장 높으면서 인가후폐지 비율도 9.3%로 높은 편이었고, 기계제조업은 조사폐지 비율이 20.3%로 낮은 편이면서 인가후폐지 비율도 3.2%로 낮았다. 즉, 조사폐지 비율과 인가후폐지 비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했다.

결국, 조사폐지 비율과 인가후폐지 비율 사이에 큰 상관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조사폐지도 많이 되고 인가후폐지도 많이 되어 회생절차 성공이 가장 어려운 업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6] 업종별 조사폐지 비율과 인가후폐지 비율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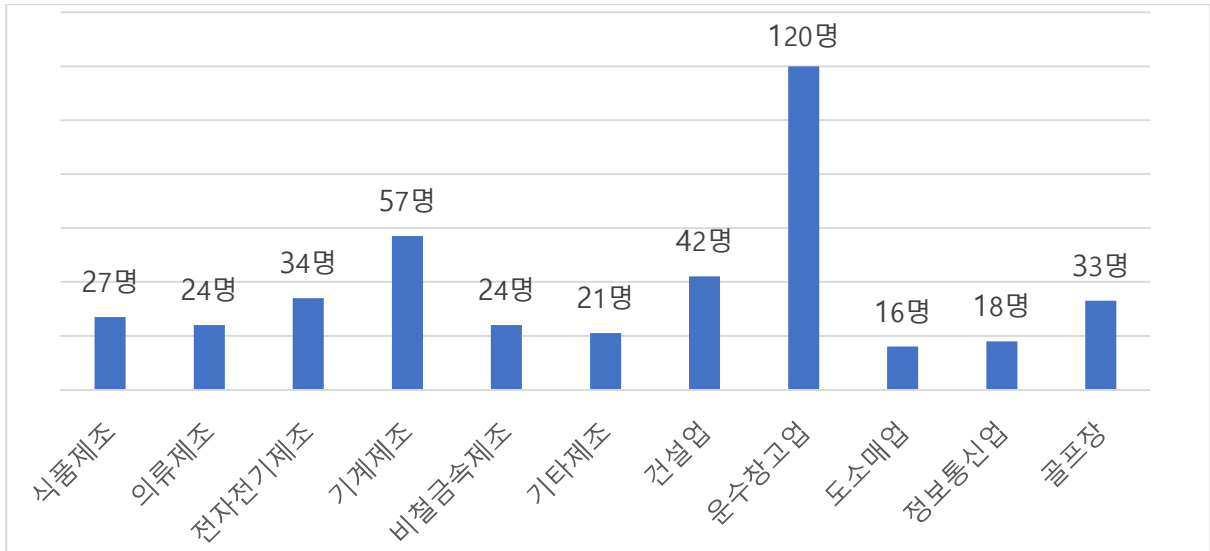


## 5. 종사자수, 자산 및 부채 규모 분석

업종별 평균 종사자수를 파악한 결과는 [표27]과 같다. 운수창고업이 120명, 기계제조업이 57명, 건설업이 42명으로 높은 편이었다. 다만, 운수창고업의 경우 한진해운 주식회사 종사자수 2,525명이 반영된 결과로, 한진해운을 제외한 운수창고업의 평균 종사자수는 47명이다. 그리고 도소매업은 16명, 정보통신업은 18

명으로 제조업에 비하여 평균 종사자수가 적은 업종이었다.<sup>3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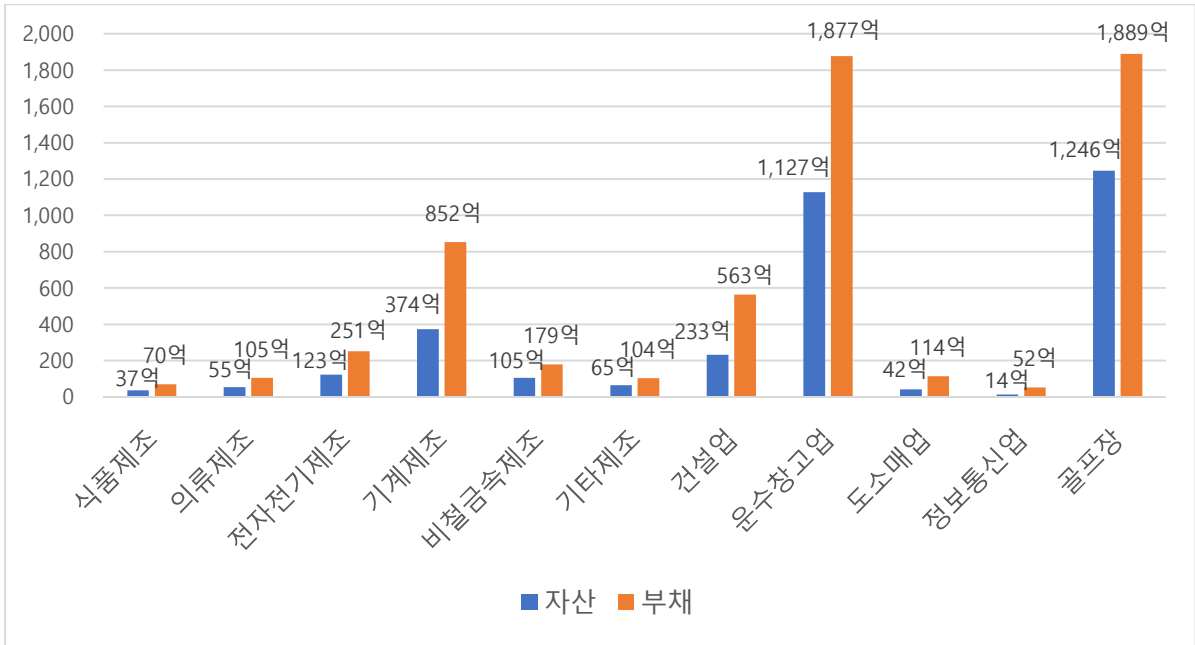
[표27] 업종별 평균 종사자수 (단위 : 명)



다음으로 업종별로 평균적인 자산과 부채를 확인하였다. 아래 [표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수창고업은 자산 1,127억 원, 부채 1,877억 원, 골프장업은 자산 1,246억 원, 부채 1,889억 원으로, 운수창고업과 골프장업을 운영하는 개별 회생기업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컸다. 그에 비하면 정보통신업은 자산 14억 원, 부채 52억 원, 식품제조업은 자산 37억 원, 부채 70억 원으로 매우 작은 규모였다. 업종별 자산과 부채 규모 차이는 업종별 평균 종사자수의 차이보다 훨씬 큰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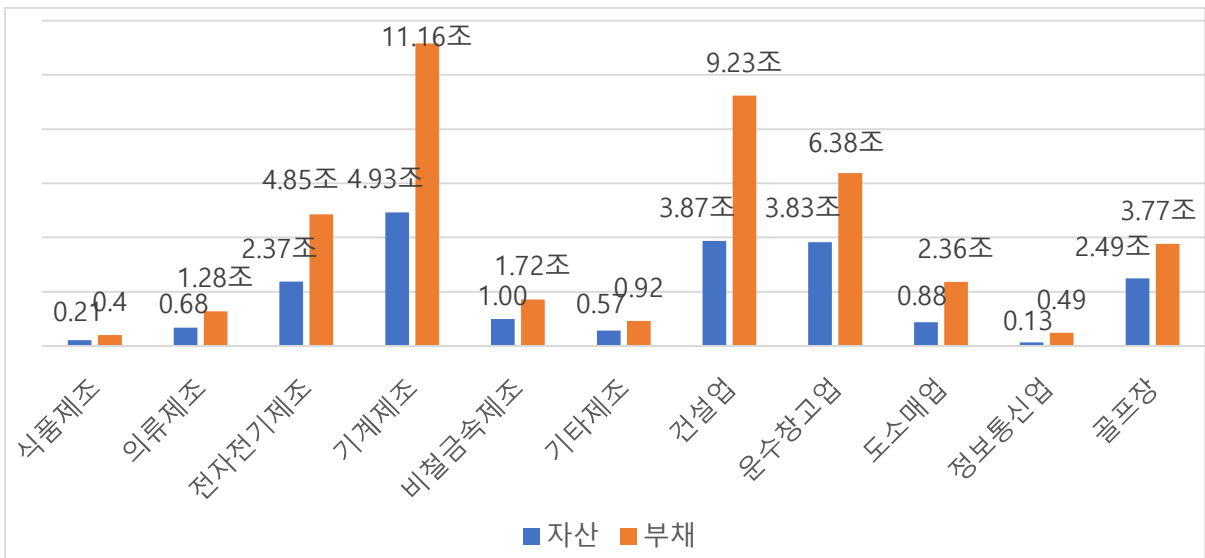
[표28] 업종별 평균 자산 및 부채 (단위 : 억 원)

<sup>37</sup> 국가통계포털(kosis.kr)의 '전국사업체조사:시도·산업·조직형태별 사업체수, 종사자수(2017)' 자료를 이용해 회사법인의 평균 종사자수를 구해보면, 전체 산업 17명, 제조업 25명, 건설업 18명, 운수창고업 25명, 도소매업 8명, 정보통신업 19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골프장업 포함) 20명이다. 전체 평균 종사자수에 비해 회생기업 평균 종사자수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정보통신업 제외).



업종별로 전체 자산과 부채 규모를 확인해 본 결과는 [표29]와 같다. 기계제조업이 자산 4조 9,387억 원, 부채 11조 1,640억 원으로 자산과 부채 규모 모두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건설업이 자산 3조 8,752억 원, 부채 9조 2,325억 원, 운수창고업이 자산 3조 8,313억 원, 부채 6조 3,824억 원으로 규모가 컸으며, 골프장업도 자산 2조 4,925억 원, 부채 3조 7,771억 원으로 규모가 컸다.

[표29] 업종별 전체 자산 및 부채 (단위 :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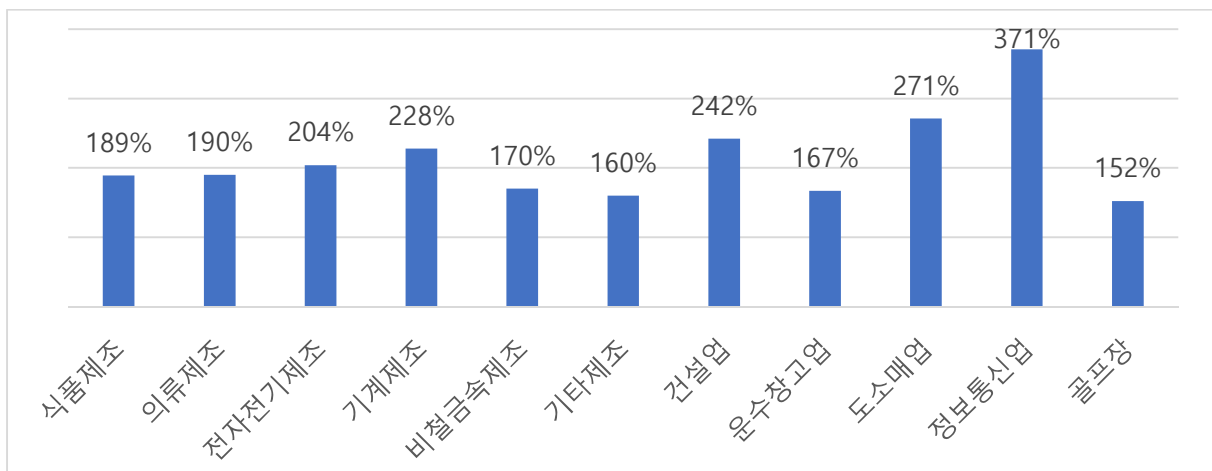




## 6. 자산과 부채 비율 분석

업종별로 부채 합계 액수를 자산 합계 액수로 나눈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구하여 보았다.<sup>38</sup> 자산에 비해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아래 [표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업이 3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도소매업 271%, 건설업 242%였고, 가장 낮은 업종은 골프장업으로 152%였다.

[표30] 업종별 “부채/자산”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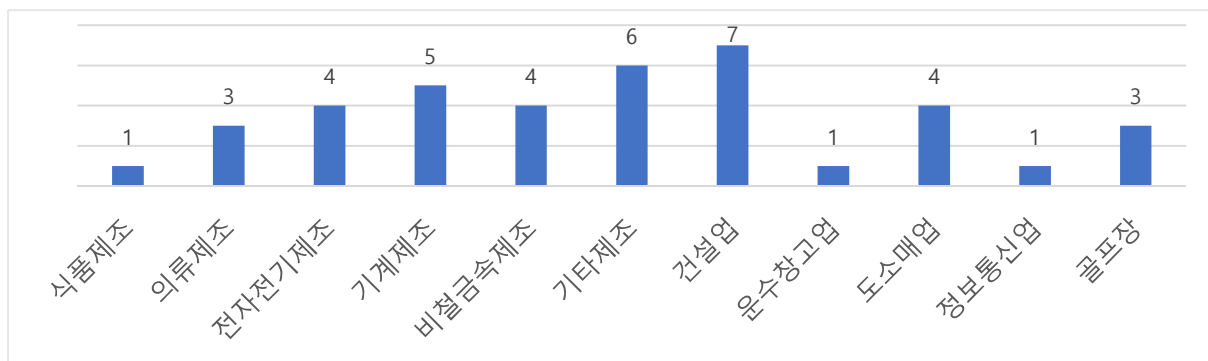


다음으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사건수를 확인해 보았다.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는 총 1,227건 중 39건으로 3.18%에 불과하여, 회생기업 대부분이 자본잠식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사건수는 아래

<sup>38</sup> 국가통계포털(kosis.kr)의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산업별(10차) 종사자수, 주요지표(2017)’에 의하면, 2017년 전체 기업체(666,095개)의 자산 합계는 9,633조 원, 부채 합계는 6,785조 원이므로,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70.43%이다(금융업을 제외한 자산합계는 4,831조 원, 부채합계는 2,578조 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3.37%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업종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제조업은 43%(자산 2,040조 원, 부채 885조 원), 건설업은 58%(자산 437조 원, 부채 254조 원), 도소매업은 54%(자산 548조 원, 부채 297조 원), 운수창고업은 61%(자산 305조 원, 부채 187조 원), 정보통신업은 43%(자산 246조 원, 부채 107조 원),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골프장업 포함)은 64%(자산 56조 원, 부채 36조 원)이다. 위 자료와 [표30] 결과를 비교해 보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기업에서는 제조업, 정보통신업이 낮고 운수창고업, 골프장업이 높은 편이나, 회생기업에서는 그 반대로 운수창고업과 골프장업이 낮은 편이고,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이 높게 나타났다.

[표31]과 같다. 건설업의 자산 초과 사건수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산 초과 사건수 비율은 기타제조업이 6.67%로 가장 높고, 다음은 비철금속업이 4.12%로 높은 편이었다.

[표31] 업종별 자산 초과 사건수 (단위 : 건 수)



## 7. “청산가치/자산” 비율 분석

업종별로 청산율(= 청산가치/자산)을 확인하여 본 결과 아래 [표32]와 같다. 업종별로 “청산가치 합계액 / 자산 합계액” 비율(이하 ‘가중평균 청산율’이라 한다)을 구하고, 개별기업 “청산가치/자산” 비율을 업종별로 단순 평균한 값(이하 ‘단순평균 청산율’이라 한다)도 구하였다.

먼저 골프장업의 경우 청산율이 28%로 매우 낮은 것이 눈에 띈다. 골프장 부지의 청산가치를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소위 ‘임야가액설’<sup>39</sup>과 ‘골프장가액설’<sup>40</sup> 등의 견해가 있으나, 실무상 임야가액설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자산 평가는 골프장 부지의 시가(감정평가액)에 따르나, 청산가치는 임야 등 개별 토지로 산정하므로, 자산 평가에 비해 청산가치가 상당히 낮게 산정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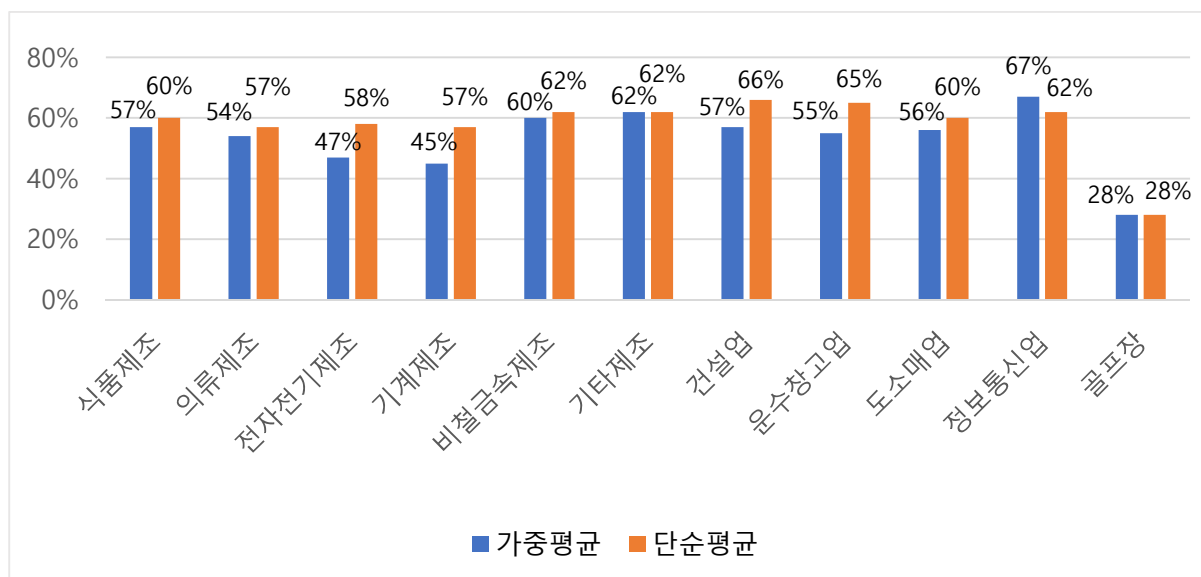
그리고 기계제조업의 가중평균 청산율이 45%이고, 전자전기제조업의 가중평

<sup>39</sup>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다액의 입회금반환채무에 대한 승계 문제로 인해 사실상 경매로 자산의 매각이 불가능하므로, 골프장을 그 용도가 아닌 임야 등 개별 토지로 분리되어 매각되는 것을 전제로 청산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sup>40</sup> 골프장으로 그대로 이용됨을 전제로 청산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균 청산율도 47%로 낮은 편인데, 이것은 자산규모가 상당히 큰 기업들인 기계제조업 중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48%),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40%), 대한조선 주식회사(35%), 전자전기제조업 중 주식회사 넥솔론(37%), 주식회사 팬택(36%) 등의 청산율이 낮아서 나타난 현상이다.

[표32] 업종별 “청산가치/자산” 비율 (단위 : %)



## 8. “계속기업가치/자산” 비율 분석<sup>41</sup>

업종별로 “계속기업가치/자산” 비율을 확인하여 본 결과 아래 [표33]과 같다. 업종별로 “계속기업가치 합계액 / 자산 합계액” 비율(이하 ‘가중평균 계속기업가치율’이라 한다)을 구하고, 개별기업 “계속기업가치/자산” 비율을 업종별로 평균<sup>42</sup>한 값(이하 ‘단순평균 계속기업가치율’이라 한다)도 구하였다. 모든 업종에서 단순평균 계속기업가치율이 가중평균 계속기업가치율 보다 크게 나왔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계속기업가치율이 크고, 자산규모가 클수록 계속

<sup>41</sup> 주의할 것은 여기서 계속기업가치 보다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하고 산정하였다는 점이다. 청산가치 초과인 경우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없어서 0원이라고 하거나, 상당히 큰 마이너스 값으로 구한 경우들이 꽤 있어서 왜곡이 심하게 나타나서 이를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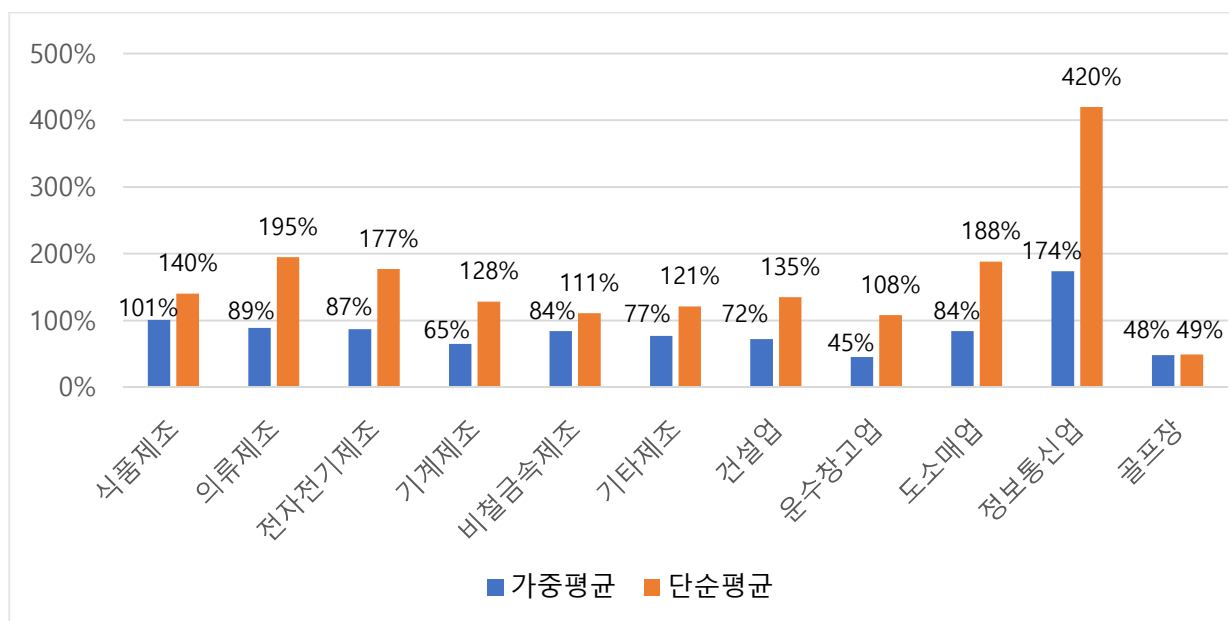
<sup>42</sup> 골프장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은 통계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기업 “계속기업가치/자산” 비율 중 가장 높은 값만 제외하고 구하였다.

기업가치율이 작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수창고업의 경우 함께 계속기업가치율이 45%로 같은 업종의 가중평균 청산율인 55%보다 낮는데, 이것은 계속기업가치율을 구할 때 청산가치가 계속기업 가치를 초과하여 조사폐지된 주식회사 한진해운(청산율 66%)을 제외하고 산정하여 나타난 현상이다.<sup>43</sup>

정보통신업의 경우 계속기업가치율 높게 나오는데, 이것은 조사위원들이 정보통신업의 향후 업황을 긍정적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자산 자체가 워낙 적어서<sup>44</sup> 상대적으로 계속기업가치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표33] 업종별 “계속기업가치/자산” 비율 (단위 : %)



## 9. 회생담보권 비율, 조세채권 비율 분석<sup>45</sup>

<sup>43</sup> 운수창고업에서 주식회사 한진해운을 제외하고 함께 청산율을 구하면 27%이다. 따라서 한진해운을 제외하면 운수창고업에서도 함께 계속기업가치율(45%)이 함께 청산율(27%)을 넘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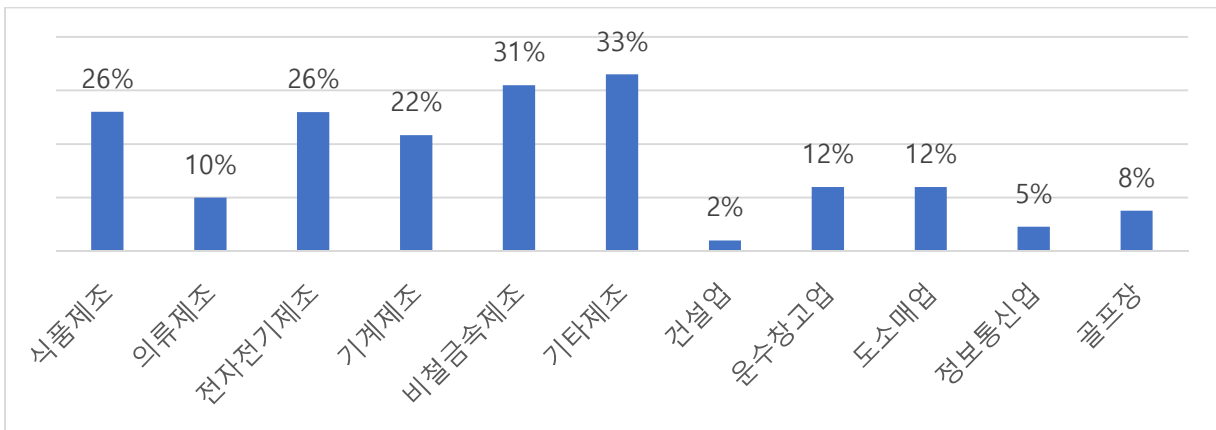
<sup>44</sup> [표28], [표29] 참조

<sup>45</sup> 업종별로 가중평균 방식인 “회생담보권합계액/(회생담보권합계액+회생채권합계액+조세채권합계액)”, “조세채권합계액/(회생담보권합계액+회생채권합계액+조세채권합계액)”으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회생담보권액, 회생채권액, 조세채권액은 회생계획상 시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와 부결폐지된 경우만 조사한 것이다.

회생계획안이 작성된 사건의 경우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액 합계(이하 ‘총채권액’이라 한다) 중 회생담보권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업종별로 어떠한지를 확인해 보았다. 회생담보권액수가 많다는 것은 회생기업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표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타제조업이 33%, 비철금속제조업이 31%로 높았고, 반면 건설업은 2%, 정보통신업은 5%로 낮았다. 회생담보권 비율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의류제조업을 제외한 제조업이 높은 편이고 다른 업종들은 낮은 편이다. 골프장업의 경우 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 담보신탁채권자의 채권이 대부분 회생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sup>46</sup> 회생담보권 비율이 적게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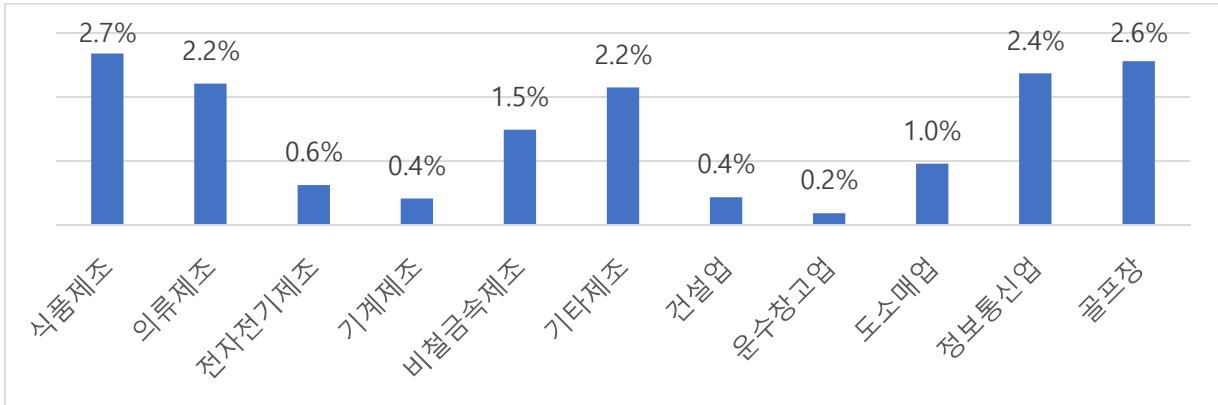
[표34] 업종별 회생담보권 비율 (단위 : %)



다음으로 업종별로 전체 총채권액 중 조세채권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해 보았다. 아래 [표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수창고업이 0.2%로 가장 낮았고, 식품제조업이 2.7%로 가장 높았다. 회생기업들의 전체 채무 중 조세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sup>46</sup> 위탁자의 채권자를 회생담보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되나, 신탁부동산은 수탁자의 소유이므로 이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회생담보권자가 될 수는 없고, 우선수익권의 경우도 채권자가 우선수익권을 부여받았다는 점만으로는 그 우선수익권이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회생담보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경우 위탁자의 채권자는 회생채권자로 취급된다[회생사건 실무(상), 제5판, 467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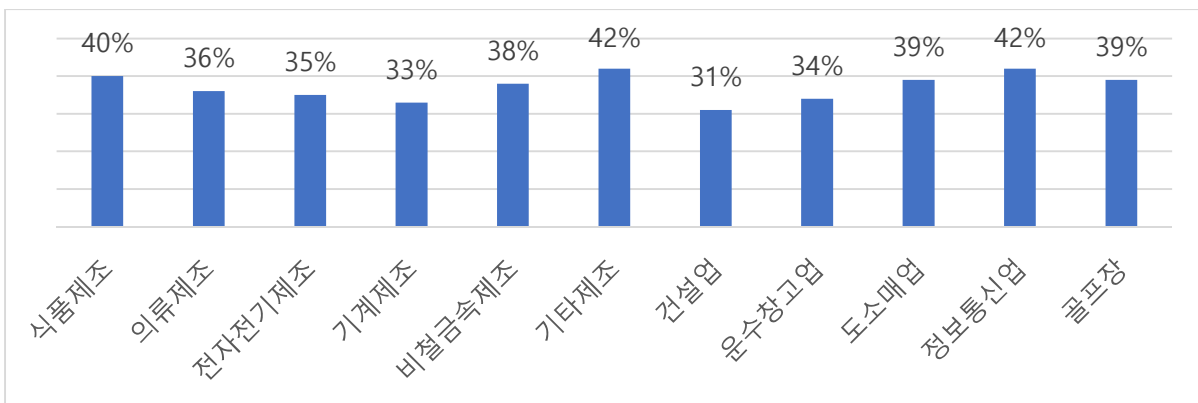
[표35] 업종별 조세채권 비율 (단위 : %)



### 10. 회생채권(대여금) 현금변제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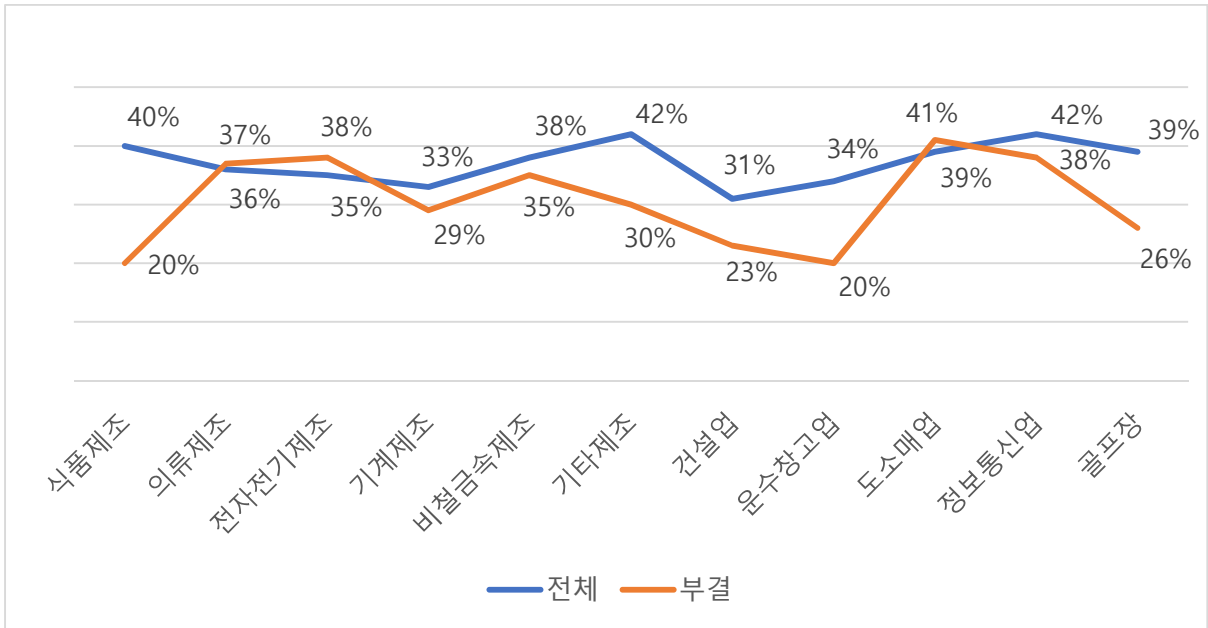
회생계획상 회생채권(대여금)의 현금변제율의 업종별 평균을 구해 보았다. 아래 [표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업이 31%로 가장 낮았고, 기타제조업, 정보통신업이 각 42%로 가장 높았다.

[표36] 업종별 회생계획상 회생채권(대여금) 평균 현금변제율 (단위 : %)



다음으로 회생계획상 대여금 회생채권의 현금변제율이 낮을 수록 부결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여, 전체 회생사건의 회생채권(대여금) 현금변제율과 부결폐지된 사건의 회생채권(대여금) 현금변제율을 비교해 보았다. 아래 [표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부결폐지된 사건의 현금변제율이 더 높은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는 부결폐지된 사건의 현금변제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37] 전체 사건과 부결폐지된 사건의 회생채권(대여금) 평균 현금변제율 비교 (단위 : %)



### 11.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 부채” 비율 분석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상 부채 총계와 회생계획상의 총채권액을 비교해 본 결과는 아래 [표38]과 같다.<sup>47</sup>

건설업의 경우 회생계획상 부채 대비 총채권액 비율이 45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건설업의 경우 각 공사현장에서 서울보증보험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 등과 보증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을 많이 체결하기 때문에 우발부채<sup>48</sup>에 해당하는 미발생구상채권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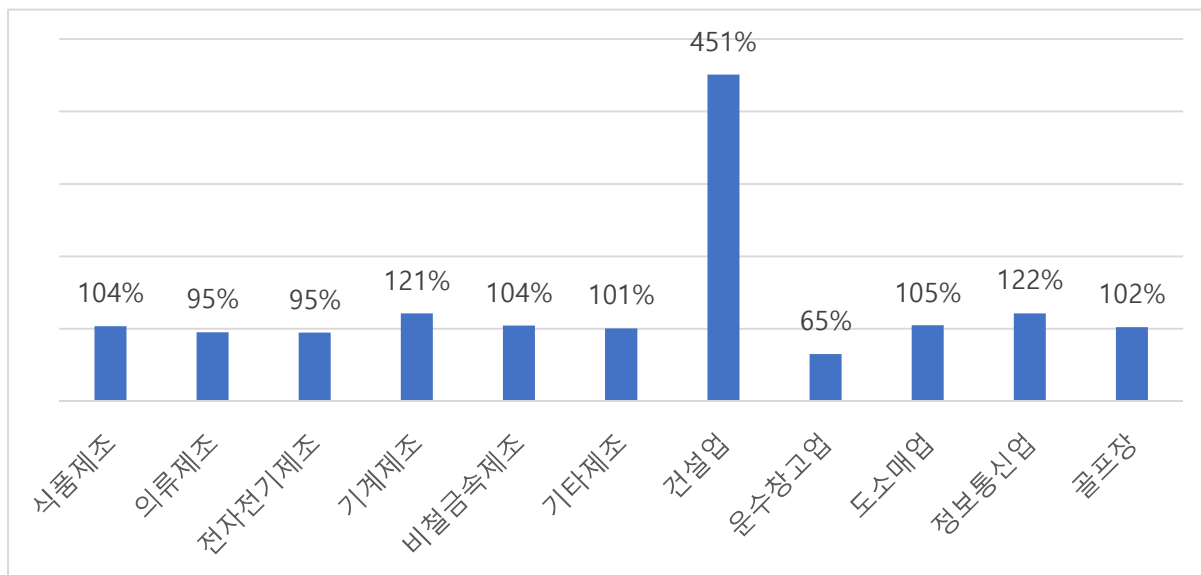
다음으로 운수창고업의 경우 회생계획상 부채 대비 총채권액 비율이 65%로 총채권액이 부채에 비해 상당히 적게 나온 것이 특이했다.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 회생계획상 시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총채권액을 구하였는데, 운수창고업의 경

<sup>47</sup> 업종별로 가중평균 방식인 “(회생담보권합계액+회생채권합계액+조세채권합계액)/부채”로 계산하였다.

<sup>48</sup> 우발부채는 ① 잠재적 의무 또는 ② 현재의무이나 i)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ii)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계상되지 않고 주석으로만 기재된다. 반면에 회생계획에서 미발생구상채권은 회생담보권이나 회생채권으로 인정되고, 다만 추후 확정되어야 변제된다.

우 총채권액에서 제외된 미확정채권액이 상당히 큰 경우가 있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이었다.<sup>49</sup>

[표38] 업종별 회생계획상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 부채” 비율 (단위 : %)



## V. M&A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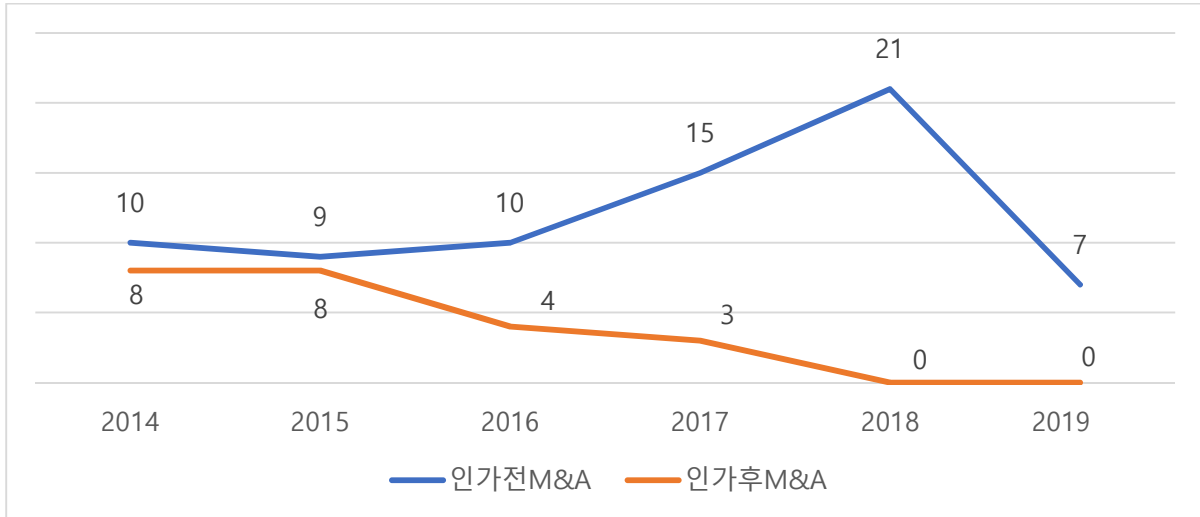
### 1. 연도별 M&A 현황

연도별로 M&A를 진행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된 사건수를 확인해 보았다. 아래 [표39]를 보면, 인가전 M&A가 2016년 10건에서 2017년 15건, 2018년 21건, 2019년(4월까지) 7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M&A 절차에서 스토킹호스 매각절차(Stalking horse bidding)를 도입한 이후 인가전 M&A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2017년부터 인가전 M&A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2017년 이후 조사폐지되는 사건이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sup>49</sup> 예를 들어, 창명해운 주식회사의 조사확정재판 중인 미확정채권액은 6,969억 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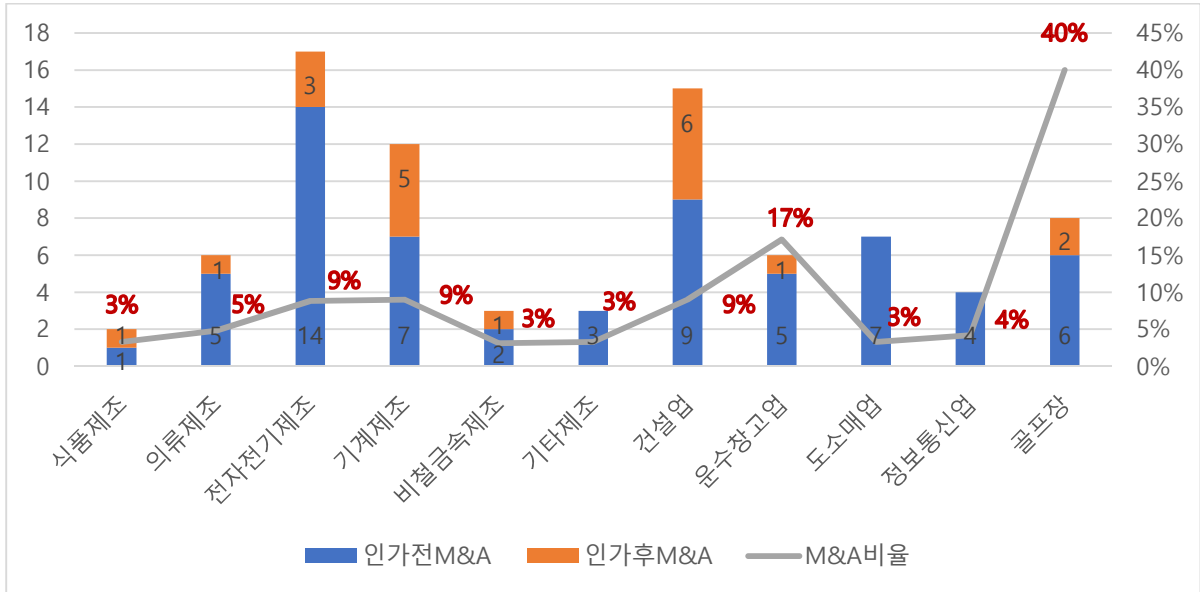
[표39] 연도별 M&A 현황 (단위: 건수)



## 2. 업종별 M&A 현황

업종별로 M&A를 진행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된 사건수를 확인해 보고, 전체 사건수 대비 비율을 구해 보았다. 아래 [표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골프장업의 M&A 성공비율이 40%로 매우 높았고, 다음으로 운수창고업이 17%, 전자전기제조업, 기계제조업, 건설업이 각 9%로 높은 편이었다.

[표40] 업종별 M&A 현황 (단위: 건수, %)



## VI. 결론

### 1. 분석결과 종합

#### 가. 연도별 분석결과

- ① 개시부터 인가까지 기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② 조기종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③ 2017년 이후 조사폐지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 ④ 2017년부터 인가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 ⑤ 스톡킹호스 도입한 2017년부터 인가전 M&A가 증가하고 있다.

#### 나. 업종별 분석결과

- ① ‘의류제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② ‘골프장업’은 조사폐지되거나 인가후폐지되는 경우가 없고, M&A가 많이 된다.
- ③ ‘운수창고업’과 ‘골프장업’을 운영하는 개별 회생기업의 규모가 다른 업종

에 비해 매우 크다.

④ ‘건설업’은 조사폐지율이 가장 높고, 인가율이 가장 낮고, 인가후폐지율도 높은 편으로, 회생에 성공하기가 가장 어려운 업종이다. 또한 회생채권(대여금) 현금변제율이 가장 낮고, 미발생구상채권이 많이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

⑤ ‘정보통신업’은 부채에 비해 자산이 매우 적다. 이에 따라 자산 대비 계속 기업가치는 높다.

## 2. 향후 대책

조사인력과 기간의 제한으로 사건마다 한정된 데이터를 수집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전문적인 기관에서 상시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번 작업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생기업과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만약 회생기업의 재무정보 중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구분된 정보, 기존 매출액 및 추정 매출액 등의 데이터가 수집되었다면 훨씬 더 많은 분석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회생기업의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번 조사는 서울회생법원에 한정된 것이었으나, 전국 법원에서 회생기업의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그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더욱 향상될 것이고, 지역별로도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 및 관리체계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작업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법인회생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